

#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崔承烈

한국법제연구원

#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Legal Study on Electronic Payment and Settlement

研究者 : 崔承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Choi, Seung-Yul

2002.

한국법제연구원

# 목 차

제 1 장 서 론 .....	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5
제 2 절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	6
제 2 장 전자지급결제 기본적 고찰 .....	7
제 1 절 전자지급결제의 의의 및 유형 .....	7
1. 의 의 .....	7
2. 유 형 .....	9
제 2 절 전자지급결제의 도입과 발전 .....	11
1. 전자지급결제의 도입 .....	11
2. 전자지급결제의 발전 .....	14
제 3 절 각국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현황 .....	20
1. 민·상사 법령에서 규율하는 국가 .....	20
2. 단행법으로 규율하는 국가 .....	25
제 4 절 법적 쟁점 및 법률시안의 내용 .....	36
1. 전자지급결제의 쟁점 .....	36
2. 전자금융거래법 시안의 내용 .....	36
제 3 장 전자지급결제의 법적 문제 .....	39
제 1 절 서 설 .....	39
제 2 절 당사자 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	40

1. 전자자금이체의 당사자 .....	40
2. 전자화폐·선급카드 등의 당사자 .....	43
제 3 절 지급에 따른 법적 문제 .....	46
1. 지 급 .....	46
2. 지급결제의 중단 .....	49
제 4 절 착오 및 오류에 관한 문제 .....	51
1. 착오에 의한 지급의 효력 .....	51
2. 오류에 따른 책임 .....	54
제 5 절 감독에 관한 문제 .....	56
1. 전자지급결제 감독기준 .....	56
2. 통합감독체계 수립 .....	58
3. 중앙은행에 의한 감독 .....	63
제 4 장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현행법제 개선방안 .....	65
제 1 절 현행법제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	65
1. 지급관련 승낙과 의무부담의 규정 .....	65
2. 감독기준 강화와 통합적 감독체계 수립 .....	67
제 2 절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개선방안 .....	69
1. 당사자 관련 총칙 규정 신설 .....	69
2. 착오 및 오류에 관한 규정 신설 .....	70
제 5 장 결 론 .....	73
참고문헌 .....	7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에 따른 전자거래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전자결제제도의 제도적 정책적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종래 어음과 수표 그리고 현금의 지불을 통한 결제제도를 가지고 채권 및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즉 지불을 통한 채무이행이라는 법률관계를 해결하는데 주 경향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금융전산망을 시도하기 시작한 1950년부터 그 일반적 지급결제제도는 새롭게 변화하여 왔고 더욱이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전자적 지급결제의 형태에 속하는 지급결제수단들이 최근에 속속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지급결제의 효시는 전자자금이체를 그 중심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 금융기관 및 정부의 관련 부서는 이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자자금이체는 근본적으로 폐쇄형 통신망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문제를 계약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가 그 계약에 구체적 내용을 상호 검토하고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이고 현실적으로는 전자자금이체를 실현시킬 통신망의 막대한 설치비용으로 인하여 거대금융기관이 중심이 된 일종의 협의체를 통한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방형 전자통신망을 이용하는 새로운 지급결제의 문제와는 제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거래 개시시점과 완료시점에 관한 검토, 전자적 의사표시, 하자 및 예기치 못한 송금사고의 경우 책임 귀속, 전자화폐의 효력, 소비자 보호 및 사적 정보의 남용에 대한 구제 및 대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률에 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또 다른 문제에 중심에는 통화에 개념에 대한 국내적 관점에서

1) 현재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서에서 가칭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작성하여 2002년 국회 회기연도에 이를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의 접근이 종래 민사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금전채권 및 채무관계로만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전자적 지급결제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가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제도에 관한 법률적·제도적·정책적 검토를 하는 것은 적정한 일이라 할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전자지불결제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기되는 법적 쟁점과 법령 규정사이의 흠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연구·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 시안”에 관한 국회상정방침과 전자금융에 종사하는 관련업계의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의 국내의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며 이에 관한 새로운 국내적 논의를 정리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는 전자지급결제가 올바르게 정착되게 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결제의 의의와 유형을 살피고 전자지급결제가 도입되어 발전한 과정을 고찰하여 각국의 입법현황을 분석하였다. 전자지급결제의 법적 문제로 당사자에 관련된 문제, 지급에 따른 문제, 착오 및 오류에 관한 문제, 감독관련 법적 문제 등을 연구 분석하여 현행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서는 국내에서 최근까지 발표 및 논의된 각종 저서, 논문, 회의자료 및 국내법률시안을 참고하였고 국제정산은행(BIS), OECD, 유럽중앙은행(ECB), EMEAP등 각종 국제기구의 지급결제관련 최근의 논의동향과 각국의 제도와 현황을 파악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법제의 적용되는 여부를 찾아보았고 이를 국내의 전자지급결제의 문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더불어 법제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데 노력하였다.

## 제 2 장 전자지급결제 기본적 고찰

### 제 1 절 전자지급결제의 의의 및 유형

지급 또는 지급방법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어떤 방법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전자지급결제가 21세기에 그 충분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각 전자지급결제제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결제의 의미와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급이라는 것은 금전적 의무의 면제를 함의하고 채무이행을 하는 행위 또는 화폐의 이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는 몇 가지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지급은 화폐에 대한 하나의 개념이고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특별한 상품의 이전하는 것과는 다르다. 둘째, 비록 증여의 형태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급은 늘 변제의무의 면제를 의미한다. 셋째, 지급은 양도인뿐 아니라 양수인에게 일부의 행위를 요구한다.<sup>2)</sup> 이 장에서는 전자지급결제의 의의와 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의 의

전자지급결제에 관해서는 현행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결제, 전자자금이동, 전자지급, 전자지급거래, 전자자급거래 등이 그러한 용어들이다. 지급결제란 경제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하여 청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sup>3)</sup> 전자지급결제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채권·채무의 관계 및 청산의 행위에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결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채권·채무

2) Michael Brindle and Raymond Cox (Editors), Law of Bank Payment, (FT Law and Tax, London, 1996) P.1.

3) 이에 대하여 지급결제를 단순히 매도인(양도인)과 매수인(양수인)사이에 이전에 있어서 지불을 이행하는 합의된 방법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Alison Harris Solomon, Virtual Mone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7) at 37.

및 청산의 행위의 중요한 부분이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 졌을 때 이를 전자지급결제로 보는 협의의 개념도 있다. 전자지급결제의 특정한 제도를 검토하는 학술적 논의가 있어서 전자지급수단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수단을 말하며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 전자화폐, 디지털 상품권 등과 같이 그 예를 제시하는 견해와<sup>4)</sup> 전자자금이체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의 진행단계에서 전자적 수단이 도입되는 경우도 전자자금이체에 포함시켜 규율할 필요도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up>5)</sup> 일부는 자금이체에 대한 개시, 진행, 종결 단계에 따른 구분을 통해 종결단계는 이미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시단계가 전자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전자자금이체로 본다.<sup>6)</sup> 그밖에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 기존의 화폐 개념을 디지털화하여 이를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지급방식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sup>7)</sup> 전자지급결제제도는 이미 시도되고 있는 국가에서 뿐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일종의 새로운 경험이며 종래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에 접촉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이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할 때 전통적인 법률의 체계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앞에 놓여진 우리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그 방향이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결정되고 이에 따라 법제도가 정비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적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인지 모를 일이지만 사적인 금융이 보다 넓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방향으로 고려하여야 한다.<sup>8)</sup> 종래 지급 수단은 금전의 사

4) 손진화, 선급전자지급수단의 법률문제, (한국법제연구원: 위크샷 2002-4, 서울, 2002) 51쪽 참조.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 (KISDI, 과천, 1997) 184쪽 참조.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 (KISDI, 과천, 1997) 183쪽 참조.

7)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전자지불산업의 동향 및 전망 조사연구, (전경련, 서울, 2002) 43쪽; 정보통신부, 중장기 전자지불산업 육성계획안, 2002.

8) Arthur Pryor, E-commerce ,ITLT 7.10(2) , November, December 1999  
아씨는 전자상거래의 하나의 축으로 사적영역에서 뒷받침되는 전자지급결제를 진정한

용유무에 따라 현금지급수단과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구별하고 전자를 화폐(법정통화)로 후자를 그 특성에 따라 크게 어음·수표, 계좌이체, 카드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계좌이체수단에는 은행지로, 타행환, CD/ATM, 자금관리서비스(CMS; cash management service) 등이 있으며, 카드는 신용·선불·직불카드가 있다. 또한 장표의 이용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장표방식 지급수단으로는 어음·수표와 은행지로의 일반계좌이체가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는 은행지로의 자동계좌이체·대량지급과 타행환, CD/ATM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를 들 수 있다. 최근 지급수단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종래의 현금, 수표 위주의 장표방식 지급수단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와 같은 전자방식에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up>9)</sup>

## 2. 유형

전자적 지불결제수단의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하나는 전자자금이체로 해석되고 있는 EFT(Electronic Fund Transfer)이다. 수많은 컴퓨터와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수표나 다른 유가증권의 통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 종이문서에 요식 증권성과 문언 증권성 등의 권리관계에 법적 효력을 법률이나 계약 등에 의해 부여하고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다른 형태의 지급수단으로는 일반적인 것에는 직불카드로 불리어지는 직접예금, 전화지급제도, 개인별 전산 은행, 판매소자금이체(Point-of-Sale Transfers) 등으로 불리어지는 지급결제수단이 존재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작용하기 위하여서는

---

사회포괄로 보고 있다.

9)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한국은행:www.bok.or.kr 참조) 2002년 7월 15일 방문.

10) 전통적으로는 전자자금이체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메시지와 함께 지급지시 또는 지급약속 또는 추심의 대체수단이며 종이 없는 이체(paperless transactions)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See Bill Winter, Banking by Blip: Advent of the checkless society raises legal questions, (69 A.B.A.J. 263, March 1983) at 263.

한편으로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이용될 수 있어서야 하고 국제적으로 승인 받아야 하며 그 거래 규모가 작건 또는 크건 간에 명시적으로 그 거래가 지급되고 결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즉각적이고 비조건적 지급의무의 이행, 낮거나 무료인 처리비용의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상당한 안전성을 갖추는 문제에 있어 세부적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규정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sup>11)</sup> 특정한 전자화폐의 유형은 이를 전자적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전자화폐에 속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데 양도성예금증서, 선급카드·직급카드, 신용카드 등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자무역과 관련된 보고서에서는 전자문서교환을 통한 전자무역의 미흡한 분야의 하나로 결제관련 서류에 대한 국제적 협약 및 국내법상 법적 효력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sup>12)</sup> 전자지급결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영역은 대체로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전자유가증권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법적 성질을 기초로 한 화폐와 같이 그 자체에 일정한 가치가 소재하는 지급제도(가치 소재형 지급결제제도), 채무자가 자신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지시함으로써 채무를 결제하는 자금이체제도(지급지시형 지급결제제도), 그리고 양자의 성격을 절충하여 채권적인 권리를 물권화한 지급제도(가치표장형 지급결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sup>13)</sup>

11) Christopher Rees, Electronic Payment System, International Business Lawyer (1999) Vol. 27 No. 6 at 270.

12) e트레이드 팀, 무역업계의 전자무역 활용실태 조사결과, (한국무역협회, 서울, 2002년 7월)1-18쪽 참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무역 활용이 계약 전 단계에 치중하고 전자문서교환(EDI)의 사용은 L/C 개설 등 외환분야(31.6%) 및 통관(20.5%)에서 주로 사용되고 결제(14.5%)와 상역(15.6%) 부분은 낮은 사용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결제관련 전자문서 법적 효력 등의 문제가 사용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 이를 가치 소재형 결제수단, 가치 표장형 결제수단, 지급지시형 결제수단이라 부른다. 정경영, 전자결제제도의 법적 문제, (비교사법 제7권 2호, 2000) 62-73쪽 참조.

## 제 2 절 전자지급결제 의 도입 과 발전

### 1. 전자지급결제 의 도입

초기의 전자지급결제제도는 일정한 폐쇄형 통신에 바탕을 둔 전자자금이체, 자동현금출납, 직불카드 및 스마트 카드, 폰뱅킹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자금이체는 세계의 대부분의 정산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간의 지급결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으며 그러한 기관으로는 세계금융결제기관인 스위프트(SWIFT), 미국의 금융결제기관인 칩스(CHIPS), 자동청산연합인 아치(ACH), 영국의 금융결제기관인 챗스(CHAPS)와 백스(BAGS)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금이나 일정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동현금출납, 현금자동이체, 등은 소비자금융을 위한 중요한 지급결제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불카드와 스마트 카드 등은 구입을 위해 본래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금융잔고를 근거로 하여 인출과 현금의 이동을 지시할 수 있는 지급결제제도로 미국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지급결제제도는 유통부분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제도를 창출하여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에 판매소자금이체가 있다. 카드를 이용한 지급결제는 비록 원천적으로 그 기술의 발전이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되어 1970년대 비로소 시행 가능하게 되었지만 현재 엄청난 인구가 카드소지자로 카드지급결제를 날마다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자화폐의 경우는 이보다는 훨씬 늦은 1990년대 중반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상행위를 위한 전자지급결제제도는 보편적 관심을 끌고있다. 전자지급결제는 현재 법적으로 용인된 법정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수표와 같은 전통적 지급결제도 아니며, 지급결제를 여신의 바탕에서 여신계약에 바탕을 둔 제도는 아니다. 다만 상인과 소비자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와 기업간(B2C) 거래에 있어서 물건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불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은 일반소비자에 의한 전자화폐의 사용과 가정은행제도(home banking)의 등장에 있다.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연구는 최근 전자상거래 등장과 더불어 다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온라인 무역(online trade), 웹은행(web banking) 등의 용어가 금융관련 기관, 무역관련 기관 실무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회현상의 변화로 인하여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기본적인 은행업무가 자동이체기기(ATM)·텔레뱅킹·인터넷뱅킹 등의 온라인 은행업무제도 등을 통하여 대체하고 있다.<sup>14)</sup> 유럽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콘퍼런스를 개최하였고 유럽위원회의 내부시장에 관한 재정위원장인 쉐블트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내부시장에서 전자지급결제제도의 빠른 발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회원국에 유로화폐의 소개가 전자지급을 용이하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둘째, 전자지급에 선택은 보완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법적 관점에서 보면 내부시장에서의 단일지급제도는 유럽연합지역을 발전하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sup>15)</sup> 전자상거래 출현과 동시에 전자지급결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전자지급결제를 기반으로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의 운영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

14)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른 소비자의 금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에 하나로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이용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다. 단기적으로 금융권의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전자지급제도의 발달은 단순한 금융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실업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나 장기적으로 전자적 은행제도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을 것으로 본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중은행은 5월 현재 조흥, 한빛, 외환, 한미, 경남 등 5개에 이르고 이러한 은행은 24시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만 거래하는 상대방은행의 금융서비스가 이러한 시중은행과 달리 이용시간에 제약이 따른다면 자동이체서비스로 자금이체를 실현하려는 소비자의 시도는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한,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확대, (전자신문 2002년 5월 24일 1-3면) 참조.

15) J-C. Thebault, EPSO Final Conferance on Consumer Online Payment: Trends and Challenges for Europe, (Brussels, 19 February 2002) at 2.

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적 금융관계의 변화와 국제화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출현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은 국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제도와 맞물려 입법론에 있어서 새로운 법적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sup>16)</sup>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의 확보와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충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발생할지 모르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직업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강한 경제적 성장 및 역동적이고 참신한 금융서비스는 소비자 및 투자자들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종래의 일정한 영토를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인 지급수단과는 달리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심대한 영향을 받는 전자지불결제제도는 일정한 영토를 본질적으로 넘어서 국제적으로 작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금융산업에 있어서 경쟁과 상업적 창의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의 지급수단이 수행하는 역할을 전자적 지급결제가 대체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개발비용을 들여 굳이 이러한 지급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따른다.

전자지급결제는 우리가 서비스와 재화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지급하였고 결제하였는가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의 경우에 전자적 지급과 결제가 시행되는데 입법적 준비를 오랫동안 하여왔고 입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인터넷의 초기 단계에서 전자지급결제가 시작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의 출현이후를 전자지급결제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적 정의를 어떻게 확정하는가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의 법률에 전자지급결제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가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수용형태에 따라서 후자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일관된 전개를 위하여 전자의 형

16) 최근 신용카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신금융전문업법과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고 그 시행규칙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를 초기적 전자지급결제의 시작으로 보고 후자를 본래의미의 전자지급결제의 시작으로 본다. 후자의 의미에 따른다 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어떤 법률과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는가는 새로운 연구를 요하는 부분으로 남는다.

## 2. 전자지급결제의 발전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기술의 빠른 진보와 혁신에 힘입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확산에는 전자적 매체로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인터넷과 다른 전자적 매체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전자상거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전자문서교환과 전자자금이체는 상당히 유사한 기간에 서로 다른 분야를 설정하여 발전해왔다. 전자문서교환이 재화와 용역 구매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전자자금이체는 전자문서교환을 통한 거래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발전해 왔다. 전자자금이체는 개방형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전자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급결제를 창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 발전과 세계의 곳곳에 있는 시장의 선택, 국가적 지원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기존의 제도와 결합하면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이는 커다란 대형거래를 의미하는 기업간거래(B to B)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 제도적으로나 법률적 문제도 이러한 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국가에서는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다른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전자상거래 전반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sup>17)</sup> 따라서 전자지급결제는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은 이 분야에 일찍 관심을 두고 전자의 경우는 전세계

17) Secretary Evans, Commerce Secretary Urges Minority-Owned Businesses to “Go Globally and Grow Locally”, (Department of Commerce in the USA, Washington, Aug 26 2002) at press release.

계 전자상거래 기본구조에 관한 원칙을 1997년 발표하였고 유럽도 비슷한 시점에서 전자상거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sup>18)</sup>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및 용역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전자지급결제를 통한 거래발생을 의미하고 또한 전자지급결제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재화 및 용역 등의 거래와 지급의무 등이 모두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거래 유형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가 또는 전형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자는 전자상거래는 최근 기업간 거래를 의미하는 B2B 거래, 기업과 소비자 거래를 의미하는 B2C거래, 기업과 정부의 거래를 의미하는 B2G 거래(또는 G2B 거래), 그리고 소비자간 거래인 C2C거래의 네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는 일정한 면을 특정화하여 이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가 상호작용하도록 전형적인 형태로 상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자쇼핑몰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것이다. 전자쇼핑몰과 같이 특정한 유형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기업간의 전자지급결제제도를 제외한 기존의 지급결제와 전자지급결제가 결합하여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지급결제도 거래 유형에 따라 특정한 지급결제수단을 일정한 방향에서 형성하고 있으므로 거래유형에 따라 지급결제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고 전자쇼핑몰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1) 기업간거래에서의 발전

기업간의 거래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일찍부터 발달해 왔다. 즉 대규모 부품의 제조와 공급이 요구되는 항공산업, 자동차 산업 분야 등에 있어서 전자문서교환의 형태로 일찍이 제도가 시행되어 발전해 왔다. 이러한 제도는 최근 개방형 통신망과 접촉하며 개방형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제도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 기업간의 거래를 촉진시키

18) See William J. Clinton and Albert Gore,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1st July 1997) <<http://www.iitf.nist.gov/electcomm/electcomm.htm>> and Com(97)157 final in the EU.

기 위하여 기업간거래 시장이 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매수인(구매자)와 매도인(판매자 또는 공급자)은 서로를 전자적 공간에서 만나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sup>19)</sup> 이와는 달리 북미에서는 전자문서교환에서 발생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전자자금이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로 완료하고있다.<sup>20)</sup> 기업간의 지급결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발달하여 정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 전자자금이체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기업간 지급결제뿐 아니라 소비자금융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기업간 결제제도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전자채권이다. 이 제도는 최근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협력으로 유가증권의 분야에서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유통화를 목표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고 개별은행들도 특정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sup>21)</sup> 전자유가증권과 은행간 정산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계속적 정산제도(CLR)도 그 발전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2)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에서의 발전

새로운 개방형통신망인 인터넷은 기업인에게 전세계 시장을 직접 24시간 접촉하여 365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잠재적인 인터넷의 사용을 위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많은 부분의 조정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1) 가격, 주문, 전자적 주문의 처리와 분배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게 되고, 2) 소비자의 요구에 즉시적으로 응하며, 3) 직업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4) 전자공간에서 구인을 할 수 있으며, 5) 활동비용을 감소시키고, 6) 판매 기회

19) OECD, E-commerce in Europe, (OECD Working Party, Stockholms, 25-26 April 2002) at 2,3, and 8.

20) See Roger Slavens, Big bucks spent in consumer media to reach b-to-b execs (<http://www.btobonline.com/bToB100/>).

21) 이는 각각 Virtual Account, Escrow A/C, 구매카드 결제, 현금방식결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의 다양한 이름의 결제제도가 시행중이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B2B 무역결제 워킹그룹 보고서: KIEC-000,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서울, 2002년 1월) 5 쪽 참조.

와 단골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외에도 여러 기업의 활동을 즉시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sup>22)</sup>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공간에 일정한 쇼핑물을 형성하고 이미 제정된 약관에 응낙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사이버 쇼핑물거래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클릭”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클릭랩 계약방식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자지급결제제도 중 소비자관련 부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전자지급결제제는 전자화폐의 분야와 직불카드, 선급카드, 신용카드 등의 여신을 통한 지급제도로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분야에서 긴밀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3) 개인간 거래에서의 발전

소비자간의 거래 역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소비자간에 구매와 공급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정보교환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간 거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소리바다와 같은 P2P거래가 저작권 침해로 판결이 난 후 소리바다 II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제시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간에 일종의 교환의 형태의 거래는 일정한 형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지급결제제가 사인간의 지급결제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지로, 자동현금인출기, 전자화폐, 그리고 새로운 지급결제제도에 하나인 모바일 결제 등이다. 이러한 사인간의 결제제도는 기존의 지급결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법적·제도적으로 새롭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sup>23)</sup>

### (4) 기업과 정부간 거래에서의 발전

최근 이 분야에서 두드러진 변화에 하나는 조달청과 부품조달기업간의 전자적 부품조달제도의 확립과 그 사용에 있다. 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22) See Michael L. Rustad and Cyrus Daftary, E-Business legal Handbook, (Aspen Law and Business, NEw York, 2002) at 38. 다만 그 공급의 연결에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연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인 전체 즉 소비자, 공급자, 전자 중개인, 등이 포함된다.

23) Erik Banks, E-finance,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2001) at 23-33.

템이 2002년 9월 12일부터 개통되어 주문형 메일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물품에 대한 실시간 정보과약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sup>24)</sup>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그 관련법령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제적 입찰을 위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특례규칙을 두고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정,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 특례규칙, 정부조달 협정문, 그리고 한국양허표 등을 마련하였다. 정부물품에 관한 법령으로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공공기관 계약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금융결제원과 전자이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전자이체를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sup>25)</sup> 원칙적으로는 전자지급결제제도중 기업간 거래에 이용되는 지급결제제도는 기업과 정부간의 거래에 있어서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업과 정부간의 별도의 지급결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5) 전자쇼핑몰 결제를 통한 발전

2002년 7월 현재 국내의 전자 쇼핑몰은 2491개로 6월과 비교 64개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거래액이 2001

24) 정부는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공공기관 차원에서 조달행정 전반을 전자화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사업을 전자정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여 1,400여 공공기관이 함께 이용하여 온 조달청 전자입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 지급 등 조달행정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며, 조달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일괄 공고하고, G2B에 일회만 등록함으로써 모든 공공조달에 참가할 수 있는 단일창구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 9월 30일 관련 법령 시행과 동시에 본격적인 운영이 개시될 G2B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의 이용자 등록과 시중상품물의 상품등록신청 서비스를 우선 개시하고, 9월 12일부터 전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 조달청 인터넷 정보 참조. 『<http://www.pps.go.kr/main/index.html>』

25) 조달청 보도자료 참조 2002년 8월 17일 발표문 참조. (<http://www.pps.go.kr>)

년 7월 1163억 43백만원에서 2002년 7월 1601억 53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부분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포함하면 그 총액은 5,021 억원으로 6월보다 23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 이러한 전자 쇼핑몰의 등장은 대면적 거래를 배제한 비대면적 거래를 전제로 한 지급결제 제도가 사용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그 지급결제에 있어서도 현금결제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전자지불결제나 여신을 이용한 신용카드결제, 직불카드 결제 등을 하게 된다. 그 방법이나 이용 종류에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쇼핑몰을 이용자와 쇼핑몰 운영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즉시결제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급결제제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에는 국내에서 온라인 입금의 형태의 전자지급결제가 전체 지급결제에서 2001년 27.5%에서 2002년 22.9%로 약간 하향되었으나 신용카드의 사용은 오히려 68.1%에서 72.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자화폐의 사용은 전년도 2.9%에서 7월 현재 2.6%로 커다란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sup>27)</sup>

## (6) 소 결

전자지급결제는 B2B, B2C, G2B, G2C, 등의 거래에 있어서 2002년 현재 각각 전체 총 거래액 중 각각 2.74, 3.65, 2.01,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낮은 지급결제처리율은 아직도 전자지급결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조차 낮은 처리율을 보여주는 것은 지급결제제도가 정착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sup>28)</sup> 쇼핑몰 지급결제에 있어서는 지급결제제도 중 불완전하고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전자 지급결제는 표준약관에서 그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26) 통계청, 전자상거래통계조사 결과(2002년 7월 사이버쇼핑몰조사), (통계청, 서울, 2002/9월) 1-21쪽 참조.

27) 이러한 현상은 세계정책 특히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세계 감면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8) 자세한 것은 전국경제인연합, 국내 전자지불산업의 동향 및 전망 조사연구, 2002 81-86쪽 참조.

### 제 3 절 각국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현황

#### 1. 민·상사 법령에서 규율하는 국가

포르투갈은 지급결제제도를 처리하고 전자지급결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상법인 주식거래법과 1986년 유럽 단일시장 금융지침에 따라 국내법령의 개정<sup>29)</sup>부분을 근간으로 한다. 현금결제에서는 약 73억 유로화폐의 규모의 현금이 통용되었고 비현금지불결제로는 카드와 수표에 의한 지불결제가 각각 전체 지급결제 전체 양에서 47%와 34%를 차지하고 직불카드는 비현금결제 부분에서는 약 12%를 차지하지만 전체 유통량 부분에서는 약 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신용결제는 84%가 종이 없는 자동화 장치에 의한 거래였다.<sup>30)</sup> 현금자동인출기의 이용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판매소전자자금이체는(EFTPOS)는 1990년에는 약 2672의 거래가 발생한 반면 1999년 말에 이미 81,017 기계장치에서 60,054의 거래가 있었다.<sup>31)</sup>

벨기에는 직접적으로 전자지급결제를 다루는 법률은 없고 다만 민·상사 법률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지침을 중심으로 일부 특정한 지급결제영역을 개정하고 있다.<sup>32)</sup> 현금사용이 전체 지급결제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차차로 줄어들고 있고 비현금지급결제는 신용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의 73%가 5개 신용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신용이체는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지급결제로 전자자금이체의 하나인 지급이체지시(전자적 형태의 지급지시)였다. 감소추세 있지만 유로수표카드를 포함한 수표도 아직 사용되고 있으며 직접결제, 지급카드에 사용의 확산으로 직불카드, 신

29) The regulation of the types of credit institution and financial company (Decree-Law No.298/92) and the Liberalisation of capital flows (Decree-Law Np. 170/93)

30) European Central Bank, Blue Book, (European Central Bank, June 2001) at 403-404.

31) Ibid. at 405.

32) The Law on the legal status and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1993), The Law on the Settlement finality in payments (1999), Law on cheques(1961), Law on the value date of bank operations(1997), etc.

용카드, 소매점카드, 전자화폐, 단일목적의 선불카드, 판매소결제, 자동지급결제망 등의 새로운 지급결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우체국 지급결제도 역시 사용되고 있다.<sup>33)</sup>

체코의 전자지급결제는 1964년 민법과 은행간 지급결제를 다룬 1992년 상법을 근간으로 하고 2000년 전자서명에 관한 부분은 전자서명법으로 채택되었다. 현금결제는 2001년 말 약 5.3억 유로가 순환된 것으로 밝혀졌고 현금자동인출기, 은행, 그리고 우체국 등을 통하여 지급되었다. 비현금 결제에 있어서는 신용이체, 직접결제, 수표, 지불카드 등이 사용되었다. 신용이체는 비현금 지급결제체도로 사용되고 있고 법인이나 투자자들이 계약적 금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요한 지급결제체도이다. 직접결제는 에너지나 통신요금의 납부에 주로 사용되며 수표는 국내보증수표, 개인수표, 은행수표, 여행자수표 등으로 나누어 사용되었으나 그 사용량이 전통적으로 낮다. 카드결제에 있어서는 직불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단일목적선급카드 등으로 구분된다.<sup>34)</sup>

헝가리는 지급결제에서 근간이 되는 법률은 상법과 상법의 일종인 은행법, 중앙은행법 등이다.<sup>35)</sup> 현금결제는 헝가리금융기관은 유럽연합의 은행연합에 응답회원자격으로 1991년에 가입이 허용되었고 1998년 은행표준화를 위한 유럽위원회 준회원 자격이 허가된 사실에 힘입어 증가했고 비현금지급결제는 지급이체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지급결제로서 2001년 이체의 70%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급이체는 보통지급이체와 직접이체의 두 가지 유형에서 발생하였다. 수표의 사용은 미약하고 직접결제는 1997년 도입된 이래 2001년 19.96백만 건의 이체가 발생해 0.3억 유로 가치가 이체되었고 지급카드에 있어서는 직불카드, 신용과 연기형직불카드, 도매상 카드,<sup>36)</sup> 단일목적 선급카드 등이 사용되고 있고 전자화폐

33) See ECB, Blue Book, (ECG, June 2001) at 64-70.

34) ECB, Blue Book, (ECB, Frankfurt, August 2002) at 75-78.

35) Banking Act CXII of 1996 on credit institutions and financial undertakings), Act LVII of 2001 on the National Bank of Hungary

36) 헝가리 은행법 규정에 따르면 소매상 카드는 발행회사의 통신망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1502개의 판매소전자자금이체와 703개소의 수동식표식기가 작동 중에 있다. 가액으로는 미미해서 0.57백만 유로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See ECB, Blue Book, (ECB, Frankfurt, August 2002) at 130-134.

는 아직은 운영 중에 있지 않으나 스마트카드의 사용을 신청해 놓은 회사와 은행이 있을 뿐이다. 우편증권은 주로 현금지급서비스에 사용되고 현금이체지시, 국내우편지시, 현금거래지시의 세 가지 유형의 현금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폴란드는 상법의 영역인 은행법 제63조에 의해 지급결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전통적 지급결제의 처리절차, 금융기관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급은 현금과 비현금결제로 할 수 있는데 후자는 특히 신용이체, 수표정산, 직접지급과 카드지급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은행법은 현금수표와 정산수표로 구분하여 전자를 현금결제로 보고 후자를 비현금결제로 본다. 현금결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현금결제로 수표의 경우 중간수표결제는 1936년 수표법에 객체가 되나 그 이용비율은 높지 않고 반면에 신용이체는 비현금결제에서 중요한 지급결제제도이다. 직접결제는 폴란드중앙은행에 의하여 1997년 도입되었고 직접이체의 경우 개인의 경우는 1000유로를 넘지 않고 법인의 경우 10,000유로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카드지불은 직불카드, 신용카드와 여행카드 그리고 오락카드, 소매점 카드, 선급카드, 또한 자동이체기 및 판매소전자자금이체 등의 방식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비중은 높지 않다.<sup>37)</sup>

슬로바키아에서 지급제도와 관련한 근거법은 슬로바키아 국가은행법이 되고<sup>38)</sup> 이에 의해 지급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현금결제에 있어서는 신용결제가 가장 두드러져 2001년 신용이체는 전체 비현금결제에 있어서 90.7%를 차지했고 전자적 방식과 장표에 의한 지급이체가 모두 사용되었다. 수표는 그 발행과 사용에 관하여 환어음과 수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sup>39)</sup> 보증수표의 경우 1개 보증액면가를 150유로로 하였다. 직접이체는 수취인에 의해서 개시된 지불의 형태로 직접이체와 자동대체의 되는 주로 규칙적인 지급에 사용되고 있다. 카드지급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대규모 카드회사의 카드가 사용된다. 외에도 소매상카드, 현금자동인출기, 소매점전자자금이체가 사용되고 있고 우체국 결제도 사용된다. 상

37) ECB, Blue Book, (ECB, Frankfurt, August 2002) at233-237.

38) The Law of National Bank of Slovakia Act 566/1992

39) The Provisions of Act 191/1950 on bills of Exchange and Cheques.

품권에서는 점심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상품권이 사용되고 있고 환어음 및 신용장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국제거래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전화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금융도 사용되고 있지만 그 사용이 미약하다.<sup>40)</sup>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비 현금지급결제제도가 정착되어 사용되는데 반하여 일부지역국가에서는 전통적 지급결제제도인 현금이나 어음 및 수표 등이 보편적 지급결제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어음·수표법, 인민幣를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지급결제를 규정하고 있다.<sup>41)</sup> 현금결제를 위한 현금순환은 176.7억 미국달러로 2000년 말 집계되었고 비현금결제제도로는 어음 및 수표가 1988년이래 주요한 지급결제제도로 자리잡았다. 약속어음도 1988년 관련규정이 마련된 후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 지급이체, 직접이체, 직접신용, 은행카드 등에 있어서는 지급결제 수단전체에 있어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나 절대숫자로 평가하면 상당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42)</sup>

일본의 경우, 현금결제는 소액결제 및 은행저축을 위하여 현재까지 자주 사용하고 있고 반면에 수표와 어음의 사용은 차차 감소하고 있다. 다양한 카드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전자화폐가 1997년이래 실행되고 있으나 다른 지급결제제도와 비교하면 그 사용이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1980년대 선급카드는 급속하게 팽창하기 시작했고 입법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하여 선급카드법을 1989년 제정하였다. 대부분의 선급카드는 마그네틱 방식에 의존하지만 최근 스마트카드의 종류도 최근 나타났다. 은행간 직

40) ECB, Blue Book, (ECB, Frankfurt, August 2002) at 301-303.

41)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인민은행법은 1995년 제정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어음수표법은 1995년에, 인민幣를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규정은 2000년에 제정되었다. 자금이체와 우체국환에 관한 규정은 1993년에 제정되었다.

42) EMEAP, Payment System in EMEAP Economies, (EMEAP, July 2002) at 68-71. 직접지불의 경우 2000년에 약 33.8억 달러의 가치가 이 제도에 의하여 거래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접결제는 전화결제제도를 통하여 1995년 도입되었고, 지급이체는 대부분 전자자금이체제도와 결부되어 있고, 1960년 발행된 신용카드는 가장 사용이 빈번한 지급결제이고 신용카드의 발행인은 은행지점, 소비신용회사, 소매상 등을 포함한다.<sup>43)</sup> 직불카드는 1984년 시작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1997년 규제철폐에 힘입어 “J-Debit”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현금카드와 직불카드가 결합된 형태의 지급결제도 이용되고 있다. 현금자동인출기는 1969년 처음 도입되었고 그 밖에 주식회사를 위한 회사금융(Firm banking), 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TV 뱅킹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보스와나의 법률은 로마 네덜란드 법과 영국의 보통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전자는 남아프리카의 법률의 기반을 형성하였던 관계로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영국법보다 로마 네덜란드 법률이 상위에 서며 대부분의 상사관계법은 전자의 법률체제에 속하여 있다. 어음법이 1964년 제정되고 1984년까지 세 차례 개정을 하였고, 청산소 규정은 은행법 제42조에 기본형식을 정하였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지급서비스제공자로서 보다 예금의 인출을 본 업무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급결제에 예금 인출이 주 업무가 되고 있다. 상업은행에 관해서는 은행법 1995년에서 그 설립 및 운영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비금융기관으로 은행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우체국과 신용카드회사 등이 존재한다. 현금지급결제가 주 지급결제제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현금지급 결제제도로는 은행계좌 성질에 따라 저축형계좌, 현금자동인출기 및 판매소자동이체를 포함하는 봉금지급계좌, 수표계좌, 신용카드계좌 등에 따라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이 사용된다. 중앙은행과 4개 은행이 SWIFT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전자금융은 아직은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만큼 발전되어 있지 않다.<sup>44)</sup>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아프리카예금은행법에 의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를 규정하고 일반적인 지급결제는 상사법령에 의해서 규정된다.<sup>45)</sup> 전

43) Op. cit. at 186-191. 1983년까지는 은행은 신용카드 발행인이 될 수 없었다.

44) Ibid. at 20-21.

45) The Banks Act No. 94 of 1990, the Mutual Banks Act No. 124 of 1993, the Bills of Exchange Act No. 34 of 1964, etc.

자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현금결제가 주요한 지급결제제도이고 비현금 지급결제제도로는 수표가 주지급결제제도이다. 판매소전자자금이체와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한 이체가 시행되고 있고 현금인출기 및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한 직불카드의 사용도 활발한 편이다. 신용카드결제는 전체 카드결제 2천만카드 중 약 3백만 카드가 사용 중에 있다. 전자결제제도는 주로 대규모 기업간 거래에서 사용되며 netting과 지급제도가 결합된 형태의 지급결제제도인 SAPS(the South African Payment System)가 사용되고 있다.

## 2. 단행법으로 규율하는 국가

유럽의 현황은 주로 비은행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급결제를 현금<sup>46)</sup>과 비현금으로 구분하여 전자지급결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유럽 각국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전자지급결제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만일 각국의 차이가 큰 경우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으로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유럽은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지침으로 인하여 법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 있어서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국내법 제정이 권고되고 있어 장래에 법제 정비를 마칠 지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규정과

46) 유럽에 있어서 현금결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의 12개 국가에서 이미 자국의 전통적 통화를 유로화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2002년 9월 23일 현재 유로화의 외국통화결제 비율은 다음과 같다:

Latvian lat 0.5922, MTL Maltese lira 0.4125, JPY Japanese yen 119.81, DKK Danish krone 7.4275, PLN Polish zloty 4.0640, GBP Pound sterling 0.62820, ROL Romanian leu 32317, SEK Swedish krona 9.1060, SIT Slovenian tolar 228.2150, CHF Swiss franc 1.4666, SKK Slovakian koruna 41.964, ISK Icelandic krona 85.27, TRL Turkish lira 1619000, NOK Norwegian krone 7.3325, AUD Australian dollar 1.7948, BGN Bulgarian lev 1.9462, CAD Canadian dollar 1.5409, CYP Cyprus pound 0.57389, HKD Hong Kong dollar 7.6275, CZK Czech koruna 30.302, NZD New Zealand dollar 2.0747, EEK Estonian kroon 15.6466, SGD Singaporean dollar 1.7390, HUF Hungarian forint 243.11, KRW South Korean won 1195.87, LTL Lithuanian litas 3.4522, ZAR South African rand 10.3076.

내용은 각 연합회원국의 상황에 맞도록 제정될 것으로 보여 개별적으로 특정한 전자지급결제제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는 민법, 소비자 법을 비롯한 일반법률과 수표와 지급카드의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이 된다.<sup>47)</sup> 프랑스를 비롯한 12개 국가는 2002년부터 유로화를 법화로 하여 사용하고 있다. 비현금 사용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수표 또한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직접결제는 평균소비가치로 연 약 214유로를 사용하고 직불카드는 평균 약 46유로의 2.6백만이 사용되고 있다. 1999년 37.6백만 내부 은행카드가 발행 및 순환되었고 그 밖에 신용카드 여행카드, 전자화폐, 현금자동인출기, 점포의 자금이체 등이 사용되고 있다.<sup>48)</sup> 전자지급결제가 실행되기 위하여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수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왔다. 현안 중에 소비자에 관련된 내용은 문서(증서)의 소지인은 전자지급결제에 의해 이루어진 지급지시의 철회여부에 있고 협약 증거의 타당성,<sup>49)</sup> 신용카드의 경우 절취의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sup>50)</sup> 카드사용의 취소,<sup>51)</sup> 신용코드와 카드에 관한 의무<sup>52)</sup> 등이 문제시 되어왔다. 1993년 12월 31일자 화폐금융법에서 “제로아워” 규칙이 폐지되었고<sup>53)</sup> 지급결제와 증권교환제도는 최종결제지침의(the Settlement

---

47) Law n91-1382 of 30 December 1991 relating to the security of checks and payments cards.

48) Op. cit. at 230-232.

49) Cour de Cassation, 1ère Ch. Civ., 8 November 1989.

50) Cass. Comm. 8 October 1991 카드 절도의 경우 절취된 후 자동현금인출기에 현금이 인출된 경우 인출된 현금의 책임을 현금인출을 막기 위한 모든 가능한 행위를 다하지 못한 은행에게 지운 판결이다. 이에 관한 반론도 상당히 제기되었다.

51) Tribunal d'Instance de Grenoble, 21 November 1996

52) Cass. Com, R. 10 January 1995(JCP 1995, IV, 591): 카드 소지인에 관한 판결로 신용정보를 비밀로 하겠다는 계약의무에 서명한 카드 소지인은 카드를 상시로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계약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고 소지인이 다른 오래된 카드에 신용정보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한 경우에 발생한 도난 및 사용은 계약의무 중 주의의무위반으로 그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지어야 하지만 법원은 금융기관과 카드 분실자에게 공동책임을 묻고 그 이유로는 은행 역시 오래된 카드를 폐기 또는 환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53) Article L330-1 of FMC(the Monetary and Financial Code, previously Article 93-1 of the Banking Act)

Finality Directive)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에서 의도되어 1998년 7월 2일 전자지급결제의 금융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2001년까지는 독일의 현금지급은 주로 독일통화인 지폐 및 동전의 법화 마르크화에서 2002년부터 유로화폐의 사용에 의한 결제로 바뀌었고 현금인출기를 사용한 지급결제도 약 46,000개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비현금 결제로는 신용이체, 수표, 직접지급, 카드결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 카드결제에 있어서 직불카드, 개인확인번호의 제공에 따른 전자화폐, 오프라인상의 전자화폐, 전자직접지급제도, 지급보증 없는 판매소결제, 신용카드, 소매카드, 선급카드 등이 사용되었다. 우체국 결제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개정된 독일은행법(KWG) 제1조 제9항에서 비현금지급과 결제수행이 은행의 행위임을 명시하고 은행업에 관해서는 연방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요한다. 외국인 자금이체에 영향을 주는 1999년 지급이체법(Überweisungsgesetz)이 1999년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민법전 제675-676조의 개정이 뒤따랐다.<sup>54)</sup>

영국에서 전자자금이체를 포함한 입법적 검토는 1987년 책위원회를 통한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지급지시자의 책임과 의무의 공평부담을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은행관련법, 수표법 및 어음관련법의 개정대신에 새로운 입법을 권고하였고 소비자를 별정적 보호지위로 보아 새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금융기관의 준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최근 전자화폐발행 규정이 2001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금지급결제는 영국의 파운드가 아직도 법화로서 사용되고 유로화는 사용할 예정으로 있으나 국내의 공중의 반발과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아직은 그 사용이 미루어지고 있다.<sup>55)</sup> 비현금지급결제에 있어서는 지급이체,<sup>56)</sup> 수표, 직접지불, 카드결제에 있어서는 직불카드, 신용카드, 소매점카드 등이 사용되고 전자화

54) Op. cit. at 132-136.

55) 영국의 집권당 당수인 토니 블레어 및 재무성 장관겸 부총리인 고든 브라운은 여러 차례 걸쳐서 유로화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2002년 다른 12개 국가와 더불어 사용하려 했으나 국내적 정치반발로 인하여 그 실행을 미루고 다만 사용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여러차례 걸쳐서 정치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56) 신용이체 중 고가의 신용가치를 이동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국내 지급결제수단인 CHAP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은행간 전자신용이체에 관해서는 BAGS가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폐에 있어서는 전화카드와 같은 선급형 전자화폐가 주류를 이룬다. 현금 자동인출기의 사용은 1991년에서 1999년 사이에 약 만여 군데에서 설치되었다. 우편결제도 사용되어 은행구좌가 없는 고개들의 소액지급결제에 사용되고 있다.<sup>57)</sup>

스웨덴은 결제제도법, 교환정산처리법, 금융증권계좌법<sup>58)</sup> 등에 의하여 전자지급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자동현금인출기의 보급에 따라 현금결제가 증가하여왔다. 비현금 지급결제부분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지로 즉 체신지로(Postgirot)와 은행지로(Bankgiro)로 발전하여 전자가 소비자 금융에 그리고 후자가 금융기관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왔고 각각 458백만과 338백만 건의 지급결제가 1999년 말까지 발생하였다.<sup>59)</sup>

덴마크에 있어서는 1931년 제네바 협약에 기초한 수표법 1932가 수표관계 지급에 기본이 되고 지급카드법(1984)은 전자자금이체와 같은 지급결제를 고려하여 카드소지자의 보호에 주 관심을 두면서 카드의 오용에 대하여 카드 발행인과 카드소지인이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였다. 주식거래법은 2000년 수정되었다. 전체 현금결제가 매년 5-6%로 증가하여 1999년 말 46.4억 DKK에 달하였다. 비현금결제에 있어서 돋보이는 사항의 하나는 직불결제제도가 우선하는 지급이체의 발전에 있다. 즉 채무자는 현금이나 수표를 우체국이나 자신의 계좌에서 인쇄된 형태의 우체국지로 이체를 지시하는 것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1991년 중반에 지로뱅크와 덴마크은행연합에 계약에 의하여 지로뱅크(GiroBank) 전환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수표가 주요 직불결제 수단이었으나 1986년 이후 그 사용량이 감소하였다. 다만 수표의 액면가액이 134유로 이하의 수표에 있어서는 수취인의 은행에서 반드시 그 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불결제에 있어서는 지급서비스 이름으로 미리 허가된 직불결제가 1974년이래 사용되었고 이 제도는 현재 PBS(Pay-

57) ECB, Blue Book, (ECB, Frankfurt, June 2001) at 490-495.

58) The Settlement Systems Act 1999, the Exchange and Clearing Operations Act 1992, the Financial Instruments Accounts Act 1998, etc.

59) European Central Bank, Blue Book, (European Central Bank, June 2001) at 462-463.

ment Betalings Services)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직불카드는 1999년말 2.8백만 카드로(Dankort Cards) 2641개의 현금자동인출기와 70,000 판매소전자자금이체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선급카드, 우체국 증권 등이 사용되고 있다.<sup>60)</sup>

뉴질랜드는 상법 및 소비자보호법은 모든 상행위에 적용되며 1993년 회사법은 회사 적정운영과 파산관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1993년 금융보고법은 금융정보회사가 주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내용과 본질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며, 1996년에 제정된 금융거래보고법은 돈세탁 관련 문제에 적용되며, 1986년 무역법은 다른 국가의 반신탁법률과 유사한 법률이다. 이와 아울러 1986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근거법원으로 작용한다. 현금결제는 소액결제제도로서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판매소전자자금이체와 다른 전자지급결제에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의 성장을 보여왔다. 비현금결제에 있어서 지불제도는 수표, 직접가입이체(Direct entry transactions), 카드결제, 가치저장카드와 전자화폐결제, 전자문서이체, 제3자 청구결제 등이 있다. 수표는 현저하게 그 사용이 줄어들고 있고 직접가입이체는 일방의 상대방에게 많은 액수의 지불을 하는 경우 자주 사용하는 제도로 직접결제와 전자지급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포함한 카드결제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 현금자동인출기 및 판매소전자자금이체를 포함한 직불카드는 널리 사용된다. 가치저장카드는 전화카드와 같이 단일목적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 중에 있고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지급결제는 아직 초보적 수준이다.<sup>61)</sup>

호주는 지급결제와 관련된 성문법령으로는 지급결제법, 지급결제 및 정산법, 수표법, 금융이체보고법, 무역실무법 등의 규정과 통일소비자신용규정 등의 법령이 있고 불문법으로 보통법과 국제거래 및 국제소송에 관한 협약 등이 적용된다. 지급결제법에서 준비은행이 광의의 규제력을 발휘하게 하여 지불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게 하였다. 소액결제에 있어서는

60) See ECB, Blue Book, (ECB, Frankfurt, June 2001) at 99-103.

61) EMEAP, Payment System in EMEAP Economies, (EMEAP, July 2002) at 317-321.

현금결제가 주로 사용되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이 주 지불결제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수표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비현금결제지불제도 이었고 소매신용이체를 위한 지로 통신망의 보급은 없다. 다만 실시간총액처분제도의 도입으로 보증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 카드지급제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여행, 오락, 그리고 소매점 카드 등과 같은 다목적 카드로 이루어졌다. 현금자동인출기는 직불카드와 연계되어 개인확인번호의 확인 후 지급된다. 판매소전자자금이체, 가치저장카드와 전자화폐도 사용되고 있고 요금청구를 위한 우체국결제제도도 사용된다.<sup>62)</sup>

캐나다에서는 1996년 지급결제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급정산과 결제에<sup>63)</sup> 관한 법률(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이 제정되어 중앙은행이 제도적 위험을 통제할 목적으로 하는 지급결제에 관한 감독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칙이 1997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침은 위 법률의 제17조에 따라 제정되었고 이 지침의 목적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sup>64)</sup> 다양한 지급결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현금결제, 수표, 직불카드결제, 신용카드결제,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이 사용되고 있고 현금을 제외하고는 지급제도가 권리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에 의해 CPA를 두었다.<sup>65)</sup> 현금결제는 점차로 증가

62) EMEAP, Payment System in EMEAP Economies, (EMEAP, July 2002) at 20-22.

63) 청산 및 정산제도가 캐나다에 최초로 정착한 것은 할리팩스에서 1887년의 일이었다. See Staff of the Bank of Canada and the Department of Finance, The Payment System in Canada, (PSAC, 1997) at 2.

64) 이는 구체적으로 적절한 청산 및 정산제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청산 및 정산제도가 법률에 대상이 되는 제도적 위험을 어렵게 만드는 상태로 수행되는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고 그밖에도 청산 및 정산제도가 목적인 것의 적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는데 있다.

These minimum standards incorporate those set out in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bank Netting Schemes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roup of Ten Countries (the Lamfalussy Report), which were published by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in November 1990.

65) (CPA:Canadian Payments Association)는 비영리법인으로 1980년의 의회법으로 설립되었다. 회원으로는 은행, 신탁회사, 신용조합, 지역공조회, 서민금융사(caisses populair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CPA는 두 가지 위임업무를 수행한다. 국가 청산

하는 추세에 있고 현금통화를 용이하게 하는 현금자동인출기와 판매소전자자금이체도 적극적으로 사용된다.<sup>66)</sup>

미국은 소비자신용보호법, 전자자금이체법 및 동 시행규정, 연방준비법(FSA) 및 동 시행규정(Reg J), 미국통일 상법전 등으로 전자자금이체, 소비자 관련 지급결제, 등 전자지급결제를 위한 입법으로 상당한 부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금결제는 2000년 약간 감소하다 2001년 다시 증가의 추세를 보였다.<sup>67)</sup> 비현금지급결제에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지급결제제도는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대규모 지급결제제도에 하나인 자동정산제도(the Automated Clearing House: ACH)이다. 수표는 1979년에 약 37억 달러 규모의 지급결제가 발생했고 1995년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팽창을 보여주다가 2000년에 이르러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였다.<sup>68)</sup>

우리 법률은 직접적으로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규정은 전자거래법상에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침의 하나로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69)</sup>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에 전자결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전자적 대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즉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등의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지급결제에 따른 신뢰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의

---

및 정산제도의 개발과 수행이 하나요 국가지급제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업무이다.

66) BIS, Statistics on payment systems in the Group of Ten countries, (BIS, Basel, March 2001) at 14-24.

67) See Currency statistics from Federal Reserve in the USA dated on March 14, 2002.

68) Federal Reserve in the USA, The Use of Checks and other noncash payment instrument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Reserve Bulletin, August 2002) at 360-374.

69) 전자거래법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

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지급수단의 일종임을 규정하고 있다.<sup>70)</sup> 전자금융거래법 시안에서는 지급자가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동을 지시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자금융거래로 전자지급결제를 정의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수표·어음의 사용이 지급결제에 있어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전자자금이체를 포함하는 비현금결제는 증가하였다. 전자지급결제제도는 2001년에 총 지급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6%로 높아졌다. 신용결제 및 직접결제를 포함하는 자금결제는 증가되었고 신용결제는 다양한 소매지급제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할부판매, 세금, 공과금지급에 있어서 지로제도를 통한 신용결제는 자주 사용되고 있고 은행간 자금결제, 현금자동인출기, 전자금융제도를 통한 은행간 공유전산망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다. 카드결제에 있어서는 1969년 신용카드가 처음 소개된 이후 56일까지 기간동안 이자 없는 지불청구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당사자의 약정으로 현금자동인출기 및 CD를 통해 현금을 유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직불카드는 1996년에 도입되어 매매시 판매소결제제도를 통하여 즉각적 결제가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199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전자화폐 중 “K-cash”는 2000년에 처음으로 개발되었다.<sup>71)</sup>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형 전자화폐는 몬텍스, V-cash, K-cash, A-cash, 그리고 아이비 등이 화폐가치를 전자화하여 IC카드에 저장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는 I-cash, 이지캐쉬 등 전자화폐와 소액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마이민트, 이코인, 테이콤 사이버 패스, 올렛카드, 웹머니 코리아 등이 현재 사용 중에 있다. 선불형 전자화폐 중에 액세스형과 모바일결제의 부분은 전자지불대행서비스로 이는 다

70)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668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6687호) 제8조 제1항~제5항,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참조.

71) Op. Cit. at 236-239.

시 신용카드 대행 서비스와 계좌이체형 대행서비스, 그리고 휴대폰대행 서비스로 구분되어 신용카드 대행서비스에는 한국정보통신,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13개 VAN 사업자나 eCredit, KCP 등 PG사가 운영되고 있다. 계좌이체형 대행서비스로는뱅크타운, 이니시스, 하나은행 등 11개 사업자가 그리고 휴대폰 지불대행서비스에는 다달, 인포허브 등의 사업자가 휴대폰과 PDA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지급결제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수표도 체크프리사의 체크프리 및 FSTC의 eCheck 등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기업간 전용 전자지급서비스로서는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한 전자외상매출채권, 은행 및 카드사에서 구매전용카드 및 기업간 구매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 하나로카드 및 서울교통카드 등에서 교통카드전용 지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sup>72)</sup>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카드결제에 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유가증권인 어음 및 수표는 어음법, 수표법 등으로, 현금결제는 민법 및 상법의 변제 및 대물변제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나 전자지급결제에 관련되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자지급결제의 보통약관이 표준약관의 형태로 금융기관간에 시행되고 있으며 전자화폐에 관련된 개별약관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 (1) 미국 상법전과 유럽의 지침

#### 1) 미국 상법전 제4A-104조(U.C.C.-ARTICLE 4A-104)<sup>73)</sup>

미국 상법전 제4A-104조는 자금이체(Funds Transfers)를 규정하여 자금이체란 발행자의 지급지시와 함께 시작하여 지시의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이체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발행

72) 전경련, 국내전자지불산업의 동향과 전망 조사연구, 2002 52쪽 이하 참조.

73) “Funds transfer” means the series of transactions, beginning with the originator’s payment order, made for the purpose of making payment to the beneficiary of the order. The term includes any payment order issued by the originator’s bank or an intermediary bank intended to carry out the originator’s payment order. A funds transfer is completed by acceptance by the beneficiary’s bank of a payment order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of the originator’s payment order.

자의 은행이나 발행자의 지급지시를 수행하기로 약정된 중계은행을 포함한다. 자금이체는 발행자의 지급지시의 수익자의 이익에 대하여 지급지시의 수익자은행에 의한 승낙에 의해서 완성된다. 미국에서 데이비드와 케리는 전자화폐는 대체적 지급제도와 함께 온라인 경제를 제공한다고 한다. 즉 개별 동전이나 지폐는 발행인에 대한 청구를 표상하고 전통적인 화폐, 상품, 또는 어떤 다른 동의된 가치의 품목으로 태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sup>74)</sup>

## (2) 유럽의 지침

유럽은 1993년 유가증권분야에 있어서 투자 서비스에 대한 지침(93/22/EEC)를 통하여 유럽회원국에 있어서 규제된 시장에 대한 접근의 제한을 철폐하고, 규제된 시장을 위한 청산 기능과 추심의 수행기관의 회원권에 접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시를 통과시켰다.<sup>75)</sup> 1998년 9월 21일 유럽 위원회는 전자화폐 기관의 영업의 자문·감독과 추구를 재시작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를 위한 지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였고 이는 신용기관의 영업과 관련된 제도적, 행정적, 법적 협력에 관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1998년 10월 19일 제안을 검토하였고 즉 77/780/EEC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sup>76)</sup> 전자적 지불수단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같은 날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위원회제안을 채택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도 1999년 1월 18일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15일 55개 수정 입법안이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었고(PE A4-156/99) 위원회는 1999년 10월 29일 일반지위를 채택하였고 2000년 4월 11일

---

74) David D. Friedman and Kerry L. Macintosh, (May 2001, Santa Clara Computer and High Technology Law Journal, 17 Computer & High Tech. L.J. 273) p. 278. 참조.

75) Article 15 on Directive of 93/22/EEC of 10 May 1993 on investment services in the securities field.

76) First Council Directive 77/780/EEC of 12 December 1977 on the coordin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credit institutions. (OJ L 32217.12.1977)(COM (1998)461-1998/0252/COD-1998/0253/COD)

유럽의회는 수정안을 채택하였다.<sup>77)</sup> 지급결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관한 2000년 신용기관에 적립된 은행활동으로서 은행지침(2000/12/EC)은 지급수단의 행정과 발행은 은행을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은행허가는 강제적이지 않았고 국가법률에 위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인정으로부터 이득을 본 활동은 지침에 관한 부속서에서 명기하고 있다.<sup>78)</sup>

#### 1) 유럽 1997년 지침<sup>79)</sup>

유럽내부의 지급결제제도에 충분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유럽사회의 주요한 개관적 목표에 하나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전자지급증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체는 역내 또는 역외지급에서 가치와 양에 있어서 점차 증가함을 입증하고 있으며 기술진보와 혁신에 의해 이러한 변화는 현저하게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침은 전자지급결제에서 지급카드, 전화 그리고 홈뱅킹 등과 같은 격지자의 접속을 통한 지급결제에 적용되고 전자지급결제에 측면에서는 획득자(전자지급결제의 사용자)와 인정자(전자지급결제의 수취인)사이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87/598/EEC(1) 지침을 변경하고 소비자계약에 대한 부당 경쟁에 대한 93/13/EEC 위원회 지침을 따라 소비자와 다른 당사자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익률계산에 관한 87/102/EEC 지침을 따르고, 소비자 신용에 관한 09/88/EEC(4)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요구사항을 검증하는 지침이다.

#### 2) 지침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지급증서의 수단에 영향받는 자금이체, 전자지급증서<sup>80)</sup>의 수단에 의한 현금인출과 전자화폐증서의 가치부여와 가치제거에 적용

77) COM(2000)333 final 이는 유럽협약 제251조 제(2)항 제(c)목을 따른 것이었다.

78) European Commission, A possible legal framework for the single payment area in the Internet Market, (EC, Brussel, 2002) at 9.

79) See Official Journal No. L. 208. 02/08/1997 P.0052.

80) 전자지급증서는 문서의 소지인이 제1조 제1항에서 특별한 종류의 이체에 초래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되며 제4조(1)항, 제5조, 6조, 7조(2) (c), (d)항 등에 의해 전자화폐증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금이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화폐증서<sup>81)</sup>가 원거리접속을 통해 증서소지인에게 가치를 부여하는데 사용되거나 가치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적용된다. 수표에 의한 지급과 수표에 의한 지급에 관련된 특수한 카드의 보증기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sup>82)</sup>

## 제 4 절 법적 쟁점 및 법률시안의 내용

### 1. 전자지급결제의 쟁점

전자지급결제와 관련된 논제는 세부적으로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당사자 관계에 의한 법적 문제, 지급에 따른 법적 문제, 착오 및 오류에 따른 법적 문제, 전자지급결제의 감독에 관련된 법적 문제 등으로 대별하여 논제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전자지급결제에 당사자의 문제에 있어 예컨대 관련당사자를 하나의 체계로 일관되게 규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용어 규정과 총칙에 관한 규정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급에 관한 문제에 있어 지급의 거절과 승낙, 지급시점, 그리고 시스템 장애로 인한 실행의 중단과 같은 지급결제의 중단의 경우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논의된다. 착오 및 오류에 관한 문제로 착오에 의한 지급의 효력과 오류에 따른 책임문제가 논의되었고 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감독기준설정에 관한 문제, 통합감독 체계의 수립, 중앙은행에 의한 감독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 2. 전자금융거래법 시안의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전자금융거래의 기본틀의 법제화로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규정하는 모든 금융거래를 적용범위로 설정하고 전자문서 및

81) 전자화폐증서는 원거리접속 지급증서라기 보다는 재충전지급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허락된 지급과 개인확인번호와 다른 유사한 확인 증거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82) Article 1 of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30 July 1997 concerning transactions by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and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issuer and holder.

접근 장치에 대한 권리·의무를 강화하고 전자적 특성을 감안해 거래내용의 확인방법 및 오류 통지 등을 규정하였다. 전자금융 사고시에 책임분담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접근장치의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 전자지급결제의 정립을 위해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가능시기를 규정하였고 추심이체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수권을 얻도록 명문화하였다. 범용성과 환금성에 따라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전자화폐가 수취인과 합의하여 지급되는 경우는 채무가 변제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화폐의 양수는 시행령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입법규정을 마련하였다. 전자금융업과 관련된 규정은 비금융기관도 전자금융업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인가 및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를 구분하고 후자를 이행보조자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는 등록규정을 두었다. 전자화폐의 환금요청에 집중에 따른 현금유동성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준비금의 예치의무 규정을 두고 전자화폐의 명칭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은행의 감독권한을 규정하였다.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안전성 및 건전성 기준 준수 의무를 마련하고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기간을 의무화하였다.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및 충전한도를 설정하고 전자적 방식에 의한 약관의 공개, 설명 및 변경의 통지가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하였고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보호규정을 두었다.<sup>83)</sup>

83) 한국금융연구원,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2002) 8-22쪽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시안 제1조-제58조 참조.



## 제 3 장 전자지급결제의 법적 문제

### 제 1 절 서 설

전자적 지급결제제도는 그 사용이 점차로 확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례, 기술, 표준, 그리고 법률이 서로 다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종래 금융권과 비금융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실무상의 구분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새로운 지급결제제도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구분이 상당부분 엷어지게 되었고 경쟁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며<sup>84)</sup> 기존의 법리를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대적 의미의 금융기관은 예금액 청구를 수용하는 것과 상업적 대여금을 제공하는 것이 본질하고 있으며<sup>85)</sup> 지급결제제도가 전자적 환경하에서 보다 발전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급결제체제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던 법적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지급결제에서 당사자관계를 통하여 법률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에 따라 지급에 따른 문제, 착오 및 오류에 따른 문제, 감독에 관한 문제 등으로 서술한다. 비록 현재는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제도라 하더라도 전자적 환경에 맞는 기본법제의 제정을 통하여 상행위를 보다 원활히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상호금융산업과 같은 특수한 금융산업의 경우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의 응급 자원에 대한 접촉, 파산법제의 역할,

84) See Peter Wayner, Electronic Cash for the Net Fails to Catch On,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8, 1998) at Technology section.

85) 12 U.S.C. §1841 (c)(1) (1994)에서는 금융기관인 은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term "bank" means any of the following: (A) An insured bank as defined in section 3h of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12 U.S.C. 1813(h)]; (B) An institu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y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Puerto Rico, Guam, American Samoa, or the Virgin Islands which both -  
 (i) accepts demand deposits or deposits that the depositor may withdraw by check or similar means for payment to third parties or others; and  
 (ii)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king commercial loans.

자금세탁규정의 적용,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처리에 관련된 의문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고려가 따라야 한다.<sup>86)</sup>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검토를 제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전자지급결제는 통용성에 있어 다른 지급결제제도와 비교하여 사용이 미약하다. 다만 그 발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빠르게 개발되는 기술진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다른 지급수단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전자지급결제 중 전자장치를 이용한 지급결제는 전자자금이체로 불리어 지는 지급결제, 신용카드에 근거한 지급결제, 전자화폐에 근거한 지급결제 등이 있다.<sup>87)</sup> 이 밖에도 전자유가증권의 일부가 지급결제에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국내외 무역 온라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결제시스템 구축하고 은행간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중개기관을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sup>88)</sup>

## 제 2 절 당사자 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 1. 전자자금이체의 당사자

전자자금이체에서 관련 당사자로는 지급이체인 경우는 지급인 및 지급은행, 수취인 및 수취은행으로 볼 수 있고 추심이체의 경우는 추심자 및 추심은행 및 이체 지급인 및 이체지급인의 은행 등의 4면 당사자 관계를 형성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자금이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서비스제공자와 추심은행, 지급은행, 수취은행이 다를 수 있다.<sup>89)</sup> 지급이체에

86) Denis Chamberland, Some issues to be addressed in broadening access to the canadian payments system, (17 Nat'l Banking L. Rev., June 1998) at 33.

87) George C.C. Chen, Electronic Commerce on the Internet: legal development in Taiwan, (Fall 1997,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and Information law) at 102-105.

88) 산업자원부, 전자무역 확산 전략, (산업자원부, 2002년 8월 26일) 9쪽 참조.

89) 영·미에서는 관련 당사자를 the originators and the originator's bank, the trading partner, the beneficiary and its bank, and trading partner and its third party service providers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BA, Model Electronic Payments agreements and commentary, (ABA, Chicago, 1996) at 11.

따른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해서는 합의에 의해 다양하게 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해 지급이체나 추심이체에 당사자간의 지로계약이나 특정한 방식의 규정된 바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sup>90)</sup> 당사자간에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간에 기본계약이 존재하는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3면 관계에 의하면 자금관계, 지급관계, 대가관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 지급인과 지급은행은 자금관계로 법률관계가 설정되고 수취인과 수취은행은 지급관계로, 그리고 지급인과 수취인의 대가관계로 설정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지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 은행간에도 대가관계나 자금관계 등이 설정되게 된다.<sup>91)</sup>

자금관계의 형성은 다음과 같다. 지급인과 지급은행은 자금관계를 형성하고 지급인의 지급지시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다. 지급인의 권리는 지급인과 지급은행사이에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지급이체계약상의 일반적인 권리를 가진다.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급인의 지급지시를 청약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은행의 승낙으로 지급지시가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지급지시는 지급인이나 발송을 수권 받은 사람에 의하여 수취은행에 발송되었을 때 정당하게 인정되고 정당한 지급지시에 의해 발송은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지시가 도달하는 것에 대한 지체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급인(발송인)을 대신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수권된 자에 대해서는 그 의도된 지급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피고용인 또는 지급인이 그 확인절차에 접속이 허용한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설정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sup>92)</sup> 지급인(발송인)이 정당한 지급지시를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수취인이 지고 발송되어진 정보에 대한 부인의 경우에도 같다. 발송인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바에 의하거나 또는 사용된 이체제도에 의해 예정된 어떠한 문서의 형태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sup>93)</sup> 수취인의 은행과 어떻게 수취은행이 지급지시를 따를 때 배

90) Article 4 of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

91) 정경영 앞의 책 70-81쪽.

92) See Article 5(2)(a) and 5(2)(b)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the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

93) 이는 1992년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국제상사위원회 모델법에서는 지급지시 또는 지

상될 것인가에 대한 절차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설정하지 아니한 지급인은 적절한 배상을 설정하여야 하고 자금이체가 발생하기 전에 또는 발생하는 시점에 적절하게 주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급지시를 적절하게 이행한 수취은행의 행위에 대한 범위 안에서 수취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sup>94)</sup> 이 경우 얼마나 그 범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수취은행이 새로운 지시를 부정확하게 예하 금융기관에 발송하고 그 착오가 수정되지 않고 제공되어 지급은행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sup>95)</sup> 미국의 경우는 통일상법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지시의 이행과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소비자 관련 전자자금이체에 관해서는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소비자의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sup>96)</sup> 우리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시안에서는 지급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출금기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의한 철회권을 요청하는 규정을 두었다(제15조 제2항).

지급관계의 형성은 수취인과 수취은행간에 성립된다. 수취인과 수취은행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계약관계 또는 지급인과 지급은행간,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의 계약의 효과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를 지급관계로 부르며 수취은행은 최종 수취은행인(beneficiary bank)과 중간적 성격의 수취은행(receiving bank)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자 모두는 지급지시에 따라야 하고 따를 수 없는 경우 발송인에게 주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급지시에 따르는 경우 지급지상의 수취인에게 지급지시액을 지급하고 수취인에게 지급내용의 통지할 의무가 있다. 수취은행이 지급지시를 이행할 것이 지급지시 기간을

---

급지시의 수정과 취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강화되고 있고 지급인의 권한을 부여 받은자도 같다. See article 5 of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94) Article 4 of Model Rule.

95) See comment 9 of the article 4.(UN, Draft Model Rules on electronic funds transfers: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1989, Vol. XX at 61)

96) 15 U.S.C §1693 참조.

벗어나 지체될 것을 의도하는 경우에는 배상이 제공됨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은 지급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실이 있음을 알거나 알게되는 경우 수취은행은 지급지시를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취은행이 착오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나 지급지시가 착오수정절차를 통하여 적정하게 완료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은 과실과 불완전 이행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sup>97)</sup>

대가관계 형성은 지급인과 수취인사이에 발생한다. 즉 지급인과 수취인사이에 지급이체가 채무자인 지급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지시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을 통해 수취인계좌에 입금기장하도록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가관계 또는 원인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지급인은 지급은 채무의 이행으로 변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대물변제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 외에도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은 환거래관계를 형성한다.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은행인 경우 법적 문제는 없다. 타행간이체의 경우는 양 은행간의 법률관계가 문제시되는데 지급은행과 수취은행간에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보고 환거래계약에 따라 수취은행은 지급은행의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지급인과 수취은행은 위임관계의 형성한다. 즉 지급인과 수취은행의 관계는 위임관계를 형성하고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사이에 법률관계가 지급인을 대리하여 지급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지급지시하는 것으로 따라서 지급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법률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지급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권한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해 지시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수취은행에 철회할 권한도 없으며 지급은행에 철회를 지시할 뿐이다.

## 2. 전자화폐 · 선급카드 등의 당사자

전자화폐에 있어서 전자화폐의 종류에 따라 당사자관계는 발행자와 화폐이용자에 의한 계약관계를 형성한다. 발행계약의 성질이 매매인지 위임

97) See the article 5 of Draft Model Rules on electronic funds transfers.

인지에 관해서는 전자화폐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사용자와 발행자의 계약체결내용과 발행주체가 이용자의 기존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여부에 따라 당사자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발행자와 이용자가 기존의 자금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잔고형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의 발행과 지급을 발행자가 겸하게 됨으로써 위임이라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가 발행자에서 이용자로 직접계약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행자와 전자화폐의 가맹점간에 가맹점 계약으로 특정 전자화폐의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청약과 승인하는 승낙으로 가맹점계약이 체결된다. 가맹점과 전자화폐소지인 사이에도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일정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전자화폐소지인에 대하여 전자화폐사용을 허가하고 전자화폐에 적정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매매계약에 따른다. 가맹점은 별도 가맹점계약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전자화폐발행인에 하게된다.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이를 일반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양자관계, 삼면관계, 또는 다면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양자관계는 카드발행인과 카드사용시 지급을 의뢰하는 상인과의 관계를 주로 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삼면관계는 카드 발행인이 카드 소지인과 상인의 공동이용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 형성되는 법률관계이며 다면관계는 카드 발행인, 카드 소지인, 상인, 상인의 거래은행을 기본으로 하는 사면관계에서부터 그 밖에 중개은행이 관계되는 5면 관계 등의 복잡한 법률관계의 형성의 과정을 거치고 다면관계가 현재의 전자지급결제제도에서는 보통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지급결제는 다양한 지급결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급결제의 종류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당사자관계가 확정된다. 전자자금이체의 당사자관계는 지급의뢰인, 지급의뢰인의 은행, 수취인과 수취인의 은행의 4면 당사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와 지급의뢰인의 은행과 수취인의 은행사이에 지급결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자와 모두 지급결제관계에 있는 중개은행이 포함되는 5면 당사자 관계가 일반적이다. 이에 비하여 전자화폐는 기술적 방식을 단일적 방식이

아닌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 관련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기에 쉽지 않은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전자화폐의 발행자, 전자화폐 가맹점, 이용자(전자화폐 소지인), 금융기관 등의 4면 당사자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용자의 금융기관이 전자화폐의 발행자인 경우 3면 관계로 변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경우 5면 관계를 넘어선 다면관계로 바뀔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전자유가증권의 경우도 유사한 관계를 형성해 전통적 방식의 유가증권 지급결제를 따르는 경우는 유가증권의 당사자 관계가 형성되어 화환어음과 같은 환어음의 경우 발행인(수취인), 추심은행, 수취은행, 지급인(수입상) 등의 당사자 4면 법률관계가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증권의 경우 운송인, 매입은행, 매도인(수하인), 매수인 등의 당사자간에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전자유가증권이 이러한 기본 유형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유형을 형성하는데 따르는 당사자관계는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현재 전자수표 및 전자선하증권과 같은 전자유가증권의 경우는 전통적 당사자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간의 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상사규칙을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전자지급결제의 일부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그리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를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는 전자지급결제와 직접적 연결관계가 다르므로 당사자관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으나 직불카드의 경우 직불카드의 대금으로 전자지급결제제도를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 관련 법규정 적용에 혼동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단일한 법제로 전자지급결제 당사자관계 전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일법제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제를 반영한 규정으로 당사자관계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명료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의 법률을 제정하여 당사자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제 3 절 지급에 따른 법적 문제

#### 1. 지 급

전자자금이체에서 중요한 사항에 하나는 지급을 위한 지급지시를 지급인과 추심인 사이에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있다. 지급지시는 지급인이 지급은행에 대해서 정액 또는 확정 가능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라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지급지시에는 따라서 확정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지만 지급액이 장래 확정 가능한 금액이면 족하다. 지급지시를 수령하는 수신은행은 지급지시를 은행에 대한 지급지시로 보아 수신은행을 은행시스템으로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급이체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지급제도로 보아 금융기관 외 우체국과 같은 기타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급지시가 수신은행에 도달하면 승낙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승낙의 경우 수신은행은 적정하게 발신인의 지급지시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하는 경우 오집행의 문제가 발생한다.<sup>98)</sup> 승낙에 따라 승낙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수신인이 수취은행인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지급한 시점, 수취인에게 지급지시를 수신한 사실 또는 수취인계좌에 입금을 통지한 시점 등을 비교하여 가장 빠른 시점이 승낙시점이 된다.<sup>99)</sup> 수신인이 수취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집행한 시점을 지급지시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수신은행은 발신인에 의한 지급지시에 대하여 지급지시가 불명확하거나 지급지시의 적정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시스템의 장애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급지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초기 단계인 전자자금이체에서는 지급지시는 특정 금융기관이 수취인에게 지정되거나 확정된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청구된 지시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청구된 지

98) Baxter Thomas C, Raj Ghala, Proper and improper execution of payment orders, (Business Lawyer, Vol 45, 1990) at 1453.

99) Article 7 of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

시를 의미하였고 이 경우 지급지시가 적정하게 증명되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지시가 요구되고 지급지시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지급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발송인의 신분증명, 수취인의 신분증명, 수취은행의 신분증명, 제3의 은행이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의 신분증명, 현금이나 또는 계좌단위를 포함하는 자금이체의 액수 등의 사항이 요구되었다.<sup>100)</sup> 전자화폐의 경우는 지급은 가치의 이전을 의미한다.<sup>101)</sup>

#### (1) 지급의 거절과 승낙

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지시는 지급인이 지급은행이 대하여 정액 또는 확정 가능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 혹은 다른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표시로 지급은행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는 위임계약상의 수임인에 대한 지시로서 지급은행은 지급지시를 실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인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지급지시가 있는 경우 이 지시에 따라 수취인계좌에 입금을 위임하는 구체적 위임지시는 지급지시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지급인의 지급지시에 대하여 승낙여부를 지급은행이 표시하여야 하고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으나 승낙하는 경우에는 수신인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에는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집행한 때와 승낙한 때를 승낙시점으로 그리고 수신인과 수취은행이 같은 경우에는 수취인에 지급한 시점, 입금을 통지 받은 시점 등 가장 빠른 시점이 승낙시점이 된다.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지급지시의 거절과 승낙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지급으로 인한 가치이전 거절, 승낙 그리고 결제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급의 거절은 전자화폐 가맹점 등에서 재화와 서비스 제공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화폐 가맹점에서 지

100) Article 2 (m) and article 3 (2) of UNCITRAL Model Rules on electronic fund transfers. (A/CN.9/AG.IV/WP.37) 단 미국의 경우는 지급지시는 발신인(지급인)이 수신은행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일정액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일정액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구도, 전자식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U.C.C. §4A-103.

101) 상세한 것은 실행과 중단에서 전자화폐관련 내용참조.

급거절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급거절은 용역과 서비스의 제공을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지급거절과 승낙을 민사법리에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급의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예컨대 특정 쇼핑몰에서 선지급을 청약으로 요구하고 그에 응하는 것을 승낙으로 보는 선지급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약관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전환된다.

## (2) 지급시점

전자지급결제에서 지급시점은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전자유가증권 등에서 쟁점이 되어왔다. 특히 전자의 두 영역에서는 지급완료시점, 지급지시, 지급효력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자금이체는 지급지시가 이행에 들어간 때로 그리고 전자화폐의 경우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들어간 때를 지급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전자유가증권의 경우는 명백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민법상의 변제시기와 같음하여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면에서 변제한 때를 지급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전자지급결제의 전자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안에서는 효력발생시기에서 전자자금이체의 경우는 수취인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를 지급의 효력발생시기로 보고 현금출금의 경우는 현금이 지급된 때, 전자화폐 및 선급전자지급수단의 경우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 또는 수취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 한때를 지급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본다. 그밖에 전자지급수단은 지급정보가 수취인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완료된 때에 지급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sup>102)</sup> 따라서 전자수표와 같은 전자유가증권이 지급효력발생시기를 지급정보가 수취인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어음 및 수표의 지급은 민법상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여

102) 전자금융거래법 시안 제13조.

채무의 변제시점 즉 어음 및 수표상의 권리와 의무가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시점을 채무의 변제로 보아 이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는 수취인의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완료된 때와 별도의 지급효력 발생시점이 생긴다. 즉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되고 발행인은 지급인과 당좌예금계약 및 수표계약을 체결하여야<sup>103)</sup> 하므로 발행인이 지급인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시점을 지급효력 발생시점으로<sup>104)</sup> 보아 전자수표가 통용됨을 가정하면 발행인과 지급인과의 계약에 따라 발행인의 전자적 장치에 지급정보가 제공된 때를 효력발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음 및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의 경우 역시 개별적으로 정하여질 것이나 전자유가증권을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민사상의 변제의 효력에 관한 규정과 관련 유가증권 법령의 규정이 준용될 뿐이고 해석론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2. 지급결제의 중단

전자지급결제의 중단은 두 가지 사정에서 발생한다. 그 하나는 인적사정에 의한 하자있는 지급, 권한 없는 지급, 착오 있는 지급 또는 무능력자의 행위, 등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물적 사정에 바탕을 둔 기계장치 또는 시스템의 하자의 경우로 지급결제 당사자 모두는 지급결제에 따른 이행을 하고 있는 중에 물적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급결제가 원만하게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곳에서는 후자만을 논의한다.

### (1) 시스템 장애로 인한 실행 중단

전자지급결제가 일정한 전자적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실행이 중단된 경우 실행의 중단으로 인한 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귀속이 문제가 된다. 즉 시스템의 장애가 전자지급결제에 관련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해킹이나 크래킹과 같은 전자정보장치의 오작동에 의해 또는 기계적 장치의 변경에

103) 수표법 제4조.

104) 수표법 제28조 제2항 및 제29조.

의해 또는 전자정보장치가 의도적으로 변경됨에 의해 지급결제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실행중단으로 인한 책임을 특정한 당사자 일방에게 물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지급결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접근 장치라 부른다. 이 접근 장치에 관리하는 자와 접근장치를 제조 또는 프로그램한 사람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경우는 과실책임의 법리로 접근장치의 제조자 또는 프로그램제작자와 판매자 등에게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을 귀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다. 특히 기술적 하자에 대한 입증은 전자지급결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지우는 경우는 문제해결에 바람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관리자 책임 법리로 제조물에 관한 책임법리처럼 제조자에게 책임을 귀착시키는 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장애나 또는 해킹 등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리자 책임을 귀속하면서 이에 관한 보험을 일정한 수준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은 어떤 접근장치를<sup>105)</sup>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용하고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적정한 접근장치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이용자의 신원 및 거래지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다만 접근장치에 관한 담보물권설정 특히 질권의 설정의 유무가 문제된다.<sup>106)</sup> 법률시안에서는 접근장치의 도난과 분실에 따른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되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다만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sup>107)</sup> 이 조항은 시행령 등을 통하여 약관을 통한 책임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령 접근장치의 분실과 도난의 경우 귀책

105) 접근장치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사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현금카드·직불카드·전자화폐카드·신용카드 기타의 전자식 카드, 이용자의 번호 또는 사용자 번호, 비밀번호 및 인증서의 장치 및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안 제2조 제7호 참조.

106) 전자금융거래법 시안 제5조 참조.

107) 전자금융거래법 시안 제9조 참조.

사유를 논하는데 있어서 그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과실과 고의가 있는 정도가 그 중심에 서게 되는데 과실의 경우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용자가 자신의 사물함에 접근장치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서류, 문서, 자료 등을 보관하고 일정한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일반공중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책임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동법 시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또는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 및 이용자가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 또는 허용한 경우에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제 4 절 착오 및 오류에 관한 문제

### 1. 착오에 의한 지급의 효력

지급이 착오, 오류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을 인정여부가 문제가 된다. 전자지급결제에 있어 착오에 의한 거래지시의 착오 또는 오류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법의 착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개별적 또는 영역별로 판단해야 한다. 착오의 유형에 있어서도 전자지급결제의 특성상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의 착오의 경우는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으나 동기의 착오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예컨대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 지급인이 착오에 의한 지급지시를 함으로 인해 원래 지급인이 의도한 내용과 상이하게 지급지시가 실행되는 경우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요부분의 착오의 경우는 취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만<sup>108)</sup> 경미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전자지급결제에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즉 표시상의 착오라 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어떤 정도에 이르러야 중요부분의 착오인가

<sup>108)</sup> 민법 제109조 참조.

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속한 지급결제가 요구되는 전자지급결제의 환경에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내용상의 착오의 경우도 내용의 어느 부분이 착오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취소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법리적 해석과 민법의 제 109조의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전자적 환경에 기인한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인 전통적 지급결제제도에서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전자지급결제에는 적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급결제의 전자화는 근본적으로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성과 신속성을 제공하며 지급결제의 정확성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전자지급결제라는 측면에서 고려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취소가 가능하다는 민법의 규정과 전자지급결제라는 전자적 특성을 결합한 일정한 범위에서 해석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도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한 부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정형화하고 이를 전자지급결제의 근거가 되는 단행법률로 유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수취인이 상이한 경우, 지급금액의 착오, 중복발신의 문제 등을 정형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유형을 정형화하고 전자지급결제 전반에 걸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취인이 상이한” 경우는 폐쇄형 전자자금이체에서는 수취인과 지급인 사이에 표준합의서에 의한 기술공유를 명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즉시 지급인이 알 수 있어서 실제상의 문제로는 부각되지 않는다. 지급금액의 착오의 경우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지급지시는 취소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지급인에 의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109)</sup> 중복발신의 문제는 폐쇄형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법률적 논란이 발생하기 어려우나 개방형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중복 발신된 지급지시에 대한 처리가 문제시된다. 전자금융거래법

109)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

시안은 이 문제에 대해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반복수신한 전자문서는 동일내용의 문서라도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따라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스템의 하자에 따른 중복발송의 경우를 중대한 하자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스템의 하자 중에 전자적 프로그램의 하자에 관한 것은 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와 프로그램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책임이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지급인이 지급인의 프로그램제작자 또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전자화폐의 경우는 IC형 전자화폐의 경우 상이한 지급지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중복발신과 같은 중대한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중지급 또는 지급액수의 착오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자화폐 이용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 기술적 전자화폐의 성질상 가맹점(판매자)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특정한 경우에 한정될 것이므로 취소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당이득 법리에 따르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이며 환급에 관한 규정을 전자화폐 발행인과 전자화폐 가맹점, 그리고 전자화폐사용자 등 당사자 관계를 고려하여 환급의 절차와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네트워크형의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대책이 매우 상이하므로 차라리 표준약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환급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특정한 전자화폐의 약관에는 환급에 관련되어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와 결함으로 인한 사유로 인해 회원이 전자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및 회원의 정당한 환불요청의 기록된 잔액을 청구하는 때 즉시 당해 전자화폐를 회수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 훼손의 경우에 잔액확인이 즉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액확인절차가 종료된 후 잔액을 지급을 인정한다.<sup>110)</sup> 선급전자지급제도의 경우는 환급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있다.<sup>111)</sup> 전자유가증권의 경

110) 전자화폐 회원약관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111) 사이버패스 이용약관 제18조 제1항, 네티머니 회원약관 제10조. ([http://www.internetcd.co.kr/help/card/card\\_addservice\\_refund.htm](http://www.internetcd.co.kr/help/card/card_addservice_refund.htm))

우는 착오의 경우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유가증권의 성질상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중대한 착오의 경우가 아니면 취소할 수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2. 오류에 따른 책임

전자지급결제의 오류에 기인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또는 오류에 효과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류에 대한 논의가 전제된다. 오류를 금융기관직원의 실수 또는 컴퓨터의 에러 등에 의한 부정확한 전자자금이체, 전자단말기로부터 부정확한 금액의 수령, 전자자금이체 정기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 무권한자의 자금이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sup>112)</sup> 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3조 제4항에서 “고객이 오류신고를 지체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면책만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가 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자금이체를 정확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오류를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으로 쌍방의 이해를 조절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비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주장된 오류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거나 또는 고객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오류의 통지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엔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요청된다.<sup>113)</sup> 이에 대한 영미법의 법규정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분류하여 책임귀속을 논한다.<sup>114)</sup> 물론 영미법의 접근방법은 전자자금이체뿐 아니라 종래 전통적 지급결제로 사용하던 수표와 어음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접근방식이다. 즉 첫 번째로 전자지급결제의 접근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 또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류의 경우 대리인의 감독자의 감독에 따른 책임과 대리인의 책임법리로 해결하고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신뢰한 제

112) 손진화, 전자지급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인터넷법연구 제1호, 2002년 6월) 233-234쪽.

113) 정진명, 전자지급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한국전산원,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 2002년 8월) 76쪽.

114) Benjamin Geva,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s*, (Matthew Bender, New York, 1999) at 1.03[5]

3자의 경우에도 같다. 두 번째의 경우는 부정확한 전자자금이체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가능성에 기초한 고려이다. 이 경우 접근장치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접근되어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 소비자는 면책된다. 세 번째의 방법은 전자적 신뢰성과 금융기관의 안전한 확인과정에 본질을 고려하는 것이다. 고객이 전자적 진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타당하게 확인절차를 점검했는가에 따라 책임의 귀속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고객이 과실 또는 고의로 고객의 진위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반대로 고객이 충실한 경우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부가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영미법적 접근은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류의 범위와 그에 따르는 법리를 기준으로 책임귀속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부정확한 전자지급결제에서 그것이 금융기관의 실수 또는 컴퓨터의 에어에서 기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법이 그것이다. 금융기관은 안전한 컴퓨터의 설치 운영에 책임을 부인할 수 없고 금융기관 직원의 실수 역시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이 있으므로 책임을 원칙적으로 지고 다만 금융기관직원의 실수가 고객의 의도된 금융정보 또는 다른 사실자료의 제공으로 인한 경우에 일부 면책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컴퓨터, 전자기계 장치, 그밖에 프로그램 설치자, 제조자, 운영자 등을 상대로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계약책임을 동시에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전자단말기로부터 부정확한 금액이 수령된 경우에 금융기관의 책임을 정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일정하게 출금수권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전자지급결제 방법 외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는 부정확한 금액의 수령여부를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하기가 상당한 정도로 곤란한 경우, 사실상 확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을 분할할 수 있는 분담책임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다만 전자지급결제의 수행

에 있어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전자지급결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은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개별적 기재방법과 확인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책임이 타당하다. 생각건대 오류 있는 지급의 경우에 관한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의 오류와 경미한 오류로 구분하여 입법규정을 신설하고 “중요한 부분의 오류로 인한 책임을 오류를 발생하게 한 자”에게 책임을 귀속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미한 오류의 경우에는 정정이나 보완절차를 통해 전자지급결제의 처리기관의 책임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게 보인다. 중요한 오류, 예를 들어, 서명 및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어 수신은행이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신자가 책임을 지며 따라서 지급집행 및 지급집행에 따른 신뢰 결과의 손해를 발신자가 보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조회절차를 통해 조회되어 오류가 추인되는 경우의 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중요한 오류의 예를 명시하여 “1. 전자장치를 통한 부정확한 전자지급결제; 2. 전자지급결제의 기재사항 누락; 3. 무권한자의 지급” 등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미한 오류는 정정이나 보완절차를 통해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상권의 행사는 법해석으로 가능하게 하는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 5 절 감독에 관한 문제

### 1. 전자지급결제 감독기준

통화형 전자화폐는 전자화폐가 지급수단으로 한 상거래가 성립되기 전에 금액데이터로 나타나는 일정 가치가 전자화폐의 발행자로부터 전자화폐소지인에게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자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전자화폐를 말하고 예금형 전자화폐는 상거래 성립 전에 발행자로부터 전자화폐소지인에게 전자화폐의 이전을 하고 전자화폐금액에 상당하는 구입대금은 은행의 일정한 계좌에 보관하여 나중에 전자화

폐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전자화폐를 의미하는 것이다.<sup>115)</sup> 이러한 형태의 화폐발행에 관해 누가 전자화폐의 발행주체가 되어야 하는 가하는 문제와 전자화폐의 발행형태에 관해 어떤 유형의 전자화폐를 규정할 것인가에 있다. 전자에 대한 방안으로 발행기관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 발행기관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자는 방안, 일정한 발행요건을 제시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나 인가를 함으로써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sup>116)</sup> 후자의 문제는 전자화폐의 발행형태가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전자에 대하여 유럽과 미국은 견해를 달리한다. 유럽의 경우는 건전성 감독, 의무와 권리의 투명성, 기술적 안전성, 오용금지, 현금상환성 및 지급준비금에 관하여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발행자선정에 있어서도 예금은 행으로 제한하여 건전성 감독, 지급준비금, 통화 신용정책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는데 반해<sup>117)</sup> 미국은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채무관계 명시규정을 중시하여 전자자금이체법 시행규정(Regulation E and D)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 시안은 전자화폐의 발행에 관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인가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은행 등 기존의 금융기관은 이미 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화폐라도 일정한 지역 또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총 발행 잔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각각 50억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선급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과 자기자본을 각각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인가 및 등록의 요건으로 전술한 사항이외에 적절한 물적 시설 확보, 재무건전성기준 충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이 규정되었다. 일정한 제한으로는 겸업제한

115) 정경영 앞의 논문 531-533쪽.

116)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법률제도연구, 『전자상거래활성화 워킹그룹 보고서 (IIIIV), 2001』 177쪽. 지동현, 함유근, 금융정보화 추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1998) 141쪽.

117) ECB, Report on electronic money, (ECB, Frankfurt, August 1998) at 23-28, 33-34.

및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두었다. 한국은행법에 따른 예금지급준비금의 예치, 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한계예금지급준비금의 추가 보유, 예금지급준비금의 사용, 지급준비자산제도를 별도로 보유하는 등의 규정을 전자화폐발행자의 지급준비금관련 규정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후자의 문제에 관해서는 시안은 일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어떤 종류의 전자화폐를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화폐의 성질을 채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예금형 전자화폐의 경우 예금의 성격과 관련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해 계좌적 성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생각건대 전자화폐는 일정한 의미에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일정한 신뢰성을 확보가 중요하므로 일정지역 이상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발행기관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부가적으로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을 허가 또는 인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sup>118)</sup> 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신청이 본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규카드의 발급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게 달려있다. 다만 카드의 갱신 및 대체발급의 경우는 대체발급의 경우 다시 발급되는 카드의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한 적이 없는 카드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그러나 대체 발급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신용카드회원에게 발급예정 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받지 않으면 발급할 수 있다.<sup>119)</sup>

## 2. 통합감독체계 수립

### (1) 감독의 범위 및 방법의 일관성제시

감독기관은 전자지급결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제반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는데 감독의 방법과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

118) 같은 견해 정진명, 전자화폐의 법적문제와 해결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2002) 91쪽.

1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의6 제1항 제1, 2호 참조.

다. 감독기관에 의한 전자지급결제 감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전자지급결제와 전통적 지급결제가 각기 다른 감독제도를 둘 것이 아니라 통합적 감독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는 통합적 감독기관은 감독의 범위 및 방법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합적 감독체제를 갖추는 것이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통합적 감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에서 특수한 경우에는 개별적 감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법체제나 범목적상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감독으로 나누어 각각 일정한 범위에서 적용할 것이고 일반적인 금융감독은 일원화체제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감독의 주 업무로는 시스템 감시로 지급시스템의 목적과 승인 요건에 따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스템 운영 및 조직상의 주요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면허취소조치를 취하거나 시스템의 변경을 지시할 권한을 감독기관에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시스템 운영이 법률과 법령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운영되지 않거나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여지는 경우 운영자에게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열어놓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sup>120)</sup> 시안에서는 전자금융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업의 인가 및 등록, 인가 및 등록 요건, 인가 및 등록의 결격사유, 인가 및 등록의 실시 및 공고 최소자본금, 겸업제한, 신용공여의 금지, 지급준비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공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감독 및 관리 규정으로 마련하였다. 감독에 관한 규정도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감독, 회계처리의 구분,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sup>121)</sup> 청문 등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sup>122)</sup> 그러나 감독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급결제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120) Economic Bulletin, Norges Bank's oversight of payment systems-  
authorisation and supervision, (Norges bank, 2000, November, No.3)  
참조 또한 지급결제정보 제2001-3호 1-8쪽 참조.

121) 이에 관한 유럽의 입장은 연간감독보고서, 밀접관련보고서, 준수보고서, 금융보고서 등 4종류의 보고서가 유럽법에 의하여 요구된다(FSA 규정 5.27 참조).

122) 전자금융거래법안 제4장 및 제5장 규정 참조.

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및관련규정, 금융지주회사법및관련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및관련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및관련규정, 예금자보호법및관련규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및관련규정, 공적자금관리특별법및관련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및관련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및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및관련규정, 산업발전법및관련규정 등과 기타감독규정을 고려하여 감독의 범위와 방법에 일관적인 입법적 정비가 요망된다. 전자화폐의 경우는 발행기관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대한 감독이 요구된다. 즉 감독기관이 발행기관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전자화폐의 발행요건을 제한하고 예금보험을 권고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파산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123)</sup>

#### 1) 통합적 감독체제의 도입

금융기관이 보다 엄격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법령을 통하여 감독하게 된다면 금융유관기관의 경우는 보다 융통성 있는 전자지급결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좋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할 사항은 주로 4 가지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첫째, 금융제도에서 특히 지급제도와 정산에 있어서 은행의 중추적 지위로서 감독, 둘째, 은행운영에 결과하는 잠재적인 제도적 위험의 보장지위로서의 감독, 셋째, 은행계약에 따른 금융기관 본질적 지위로서의 감독, 넷째, 채무해결에 관련된 도덕적 해이와 불리한 선택의 예방적 지위에서의 감독 등이 주 영역 이었다.<sup>124)</sup> 이러한 본질적 감독지위는 금융기관을 상위에서 감독하게 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의 전자지급결제부분의

123) 정완용,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식 유가증권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보고서 (VIII), 2001) 171쪽.

124) Charles Goodhart, Philipp Hartmann, David Llewellyn, Liliana Rojas-Suarez, Steven Weisbrod, Financial Regulation: why, how and where now?, (Routledge, London, 2001) at 11.

감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제반 법률의 정비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의 발행에 따른 인가 및 허가 공인인정서 발급, 그리고 다른 관련된 내용을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를 전반적으로 감독하게 되지만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전자화폐의 발행 및 유통, 현금자동인출기, 지로 등과 같은 전자자금이체의 개별적 활용을 통하여 통화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양 감독기관의 감독규정을 전자지급결제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통합적 정비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은행은 결국 거대 채무자에게 재정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은행이 스스로 지급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이용자와 그 매도인 및 매수인 그리고 매도와 매수를 중계해 주는 중계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에서는 감독범위를 설정하여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감독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매도인의 물건이나 서비스제공에 따른 이행된 지급문제 중 전자지급결제와 관련된 부분,<sup>125)</sup> 매수인과 중계인사이의 발생하는 문제, 환불 등의 문제, 전자화폐, 전자유가증권의 발행 및 사용 그리고 폐기에 따른 기준, 제제 조항, 감독 및 검사범위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sup>126)</sup> 최근 국내의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관련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에 할인혜택을 주는 등 차별행위를 경고를 통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두 차례 이상 반복하면 가맹점 계약 해지와 함께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고발을 할 것을 발표하였다.<sup>127)</sup>

## 2)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감독의 확대

비금융기관 서비스에 감독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정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한 이유로서는 제도적 위험이 금융기관

125) 금융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법률적 책임의 문제, 해킹 등 시스템의 제3자에 의한 공격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126) 정철근, e-금융거래 고객 과실 없을 땐 금융기관이 책임, (중앙일보, 서울, 2002/08/02) 참조.

127) 조성곤, 카드결제 거부 두 차례 땐 사법처리, (한겨레신문, 2002년 8월 16일 경제면) 참조.

에 보다 덜 분명하고, 지급제도의 잠재적 분열이 잘 발생하지 아니하고, 최종해결을 위한 인식된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sup>128)</sup> 변칙적으로 금융을 제공하건 아니하건 간에 금융유관기관에 속하는 금융보조업자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개인금융의 제공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비추어 여신금융전문업법에서 규정하는 감독의 규정과 전자금융거래법안에서 규정하는 감독의 범위와 방법이 법체제상 일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유관기관이 전자지급결제와 관련된 금융유관기관 감독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비의 기본적 방향은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특히 전자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신용정보의 오용 또는 남용도 감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및 감독은 신용카드의 사업을 창의적 발전으로 유도하고 국민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중요한 척도이다.<sup>129)</sup>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의 허가 및 등록을<sup>130)</sup>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규모를 주식회사로서 각기 200억 및 400억으로 겸영여신업자의 경우<sup>131)</sup> 20억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질권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신용카드의 현금유통의 최고한도를 제한한다.<sup>132)</sup>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128) Ibid.(Charles Goodhart) at11-12.

12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참조(이하 여전법).

130) 허가 및 등록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등록·허가의 말소 또는 취소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조에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대통령령이 정한 자 그리고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재무건전성기준에 미달한자, 언급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대주주인 법인에 있어서는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여전법 제6조 참조).

131)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에서는 겸영여신업자를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로 규정하고 있다(여전법 시행령 제3조 참조).

132) 여전법 제3조 및 제5조, 15조, 16조, 제24조제1호 참조.

거절하지 못하고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지의무규정, 가맹점 모집 및 이용방식을 제한하는 규정 등을 두고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 중 신용카드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sup>133)</sup> 따라서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도 지급결제의 본래적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은 법제의 개선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 3. 중앙은행에 의한 감독

일부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는 화폐의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적 환전을 위하여 화폐에 발행을 중앙은행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대부분 국가도 중앙은행에 의한 규제와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 의한 발행과 재정경제부에 부속된 금융통화위원회에 통화정책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sup>134)</sup> 문제는 전자지급결제 중 전자화폐에 관한 중앙은행의 통제가 기존의 통화를 규제하는 법령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전자지급이체 및 전자유가증권의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원칙적으로는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측면에서 발행 및 유통에 관해서는 통화관련법령에 의한 규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범위와 방법에 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전자지급이체는 현행 금융관련법령과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에서 보여주고 전자자금이체 법리와 금융거래법안에서 제시하는 정도의 법리적 통제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전자자금이체가 다른 지급제도와 결합하여 이행되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유가증권에서는 현행 유가증권의 일부 개정

133) 여전법 제19조, 21조, 제23조, 제27조 참조.

134) 통화량의 조절이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하나가 지불준비제도로 정착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가통화위원회를 결성하여 1908-12년 사이에 이와 관련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고 근거법으로 연방지불준비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지불준비제도에 대한 은행가의 통제를 선호하는 은행가들의 견해와 은행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민주당의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근거법률은 1913년 마련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저서 참조: William A. Lovert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Law*, (West Publishing, 1997) at 45-48.

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가능한 지급결제 부분부터 발행, 지급, 수취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통합하여 중앙은행의 결제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존의 지급결제에 관한 운영세칙에 나타난 평가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여 전자지급결제도 역시 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법 제 61조의 예금지급준비율의 인상규정 제62조의 예금지급준비금 사용규정, 제63조의 지급준비자산제도 규정과 제81조의 지급결제운영관리 업무에 따른 평가의무를 부과하고 현행 지급결제제도 관리규정에 있어서 국제기준충족 권고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제 4 장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현행법제 개선방안

### 제 1 절 현행법제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 1. 지급관련 승낙과 의무부담의 규정

전자지급결제에서 지급의 승낙과 그것에 따른 의무부담의 강화는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지시의 승낙은 지급지시를 수행하는 시기부터 발생한다고 할 때 지급지시를 수령한 지급은행은 이미 존재하는 표준계약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급지시의 승낙에 의해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행의무 및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부수적으로 통지 및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행내 이체의 경우 수취인계좌에 입금기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만 타행간이체에서는 집행일에 지급지시할 의무를 부담한다.<sup>135)</sup> 주의의무도 부가되어 있어 위임에 따른 수임인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인 지급지시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밖에 통지의무 및 보고의무를 부수적 의무로 부담한다. 그러나 다른 전자지급결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지급결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계약의 형태가 여러 가지 존재하게 되고 단순히 전자적 청약과 승낙으로만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확인의 통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즉 청약이 후 승낙을 한 후 청약자나 승낙자가 확인의 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전통적인 견해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국제협약 초안(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Contracts concluded by data messages)의<sup>136)</sup> 경우는 이를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135) The article 8 (2) of UNCITRAL Model Law; UCC 4A-302 (a) (1).

136)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법적 장애요소들을 검토할 목적으로 개최된 유엔상사위원회 전자상거래 위원회(the 39 meeting of UNCITRAL Electronic Commerce Working Group)의 제39차 회의 결과 제8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자계약의 체결시점을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자의 승낙이 아니라 청약자가 승낙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때에 계약체결시점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법률에서도 일부의 규정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 및 전자결제업자 등이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주의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sup>137)</sup> 후자의 경우에 사업자 및 전자결제업자 등의 확인이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게된다. 확인의무에 따르는 법적 문제로<sup>138)</sup> 지급지시가 단순한 서명비교보다 상위의 확인대상이 된 때 지급인의 확인이 수취은행(receiving bank)이 확인을 따른 경우와 무권한 지급지시에 대해 상업적으로 안전의 방법commercially reasonable method of security)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급인은 책임을 진다.<sup>139)</sup> 안전방법에 대한 절차는 지급지시, 또는 통신을 수정하거나 지급지시가 소비자 것임을 입증할 목적으로 성립된 절차나 지급지시나 지급통신의 내용을 이체에 과실이 있음을 발견할 목적으로 성립된 절차를 의미하고 안전절차는 알고리즘, 다른 코드, 증명 단어 또는 숫자, 암호, 회수절차, 또는 유사한 안전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40)</sup> 안전한 전자지급결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권한부여와 증명이 요구되는데 전자사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위임, 도급 또는 대리계약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권한부여가 필요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자금이체가 발생하는 까닭으로 권한 부여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한부여를 인정하기 위해 증명이 요구되고 있다.<sup>141)</sup> 수취인은 지급인의 지

13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6687호】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138) 확인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인으로서 표장된 사람에 의해 제기된 지급지시의 철회, 수정, 또는 지급지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성립된 절차를 의미한다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fund transfer 제2조 (i)).

139) Article 5 (2)

140) U.C.C. §4A-201.

141) 이 문제는 국제상사위원회의 법안모임(법안모임 제17차 회의: A/CN.9/317) 검토작업에서는 본문 조항에 하나로 다루어져 왔으나 제18차 회의 결과 제2조 (1)항으로 규정되었고 그 의미도 지급인(발신인)과 수취인(수신자)간에 문서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사용된 기술로 함축되게 되었다. 그러나 모델법에서는 절차로 보고 보다 포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See more details from “Article 2(i) of UNCITRAL Model Laws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and “Yearbook of

급에 따른 지급수령여부를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기일, 지급인, 지급금액 등 수령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관한 내용이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에서의 전자자금이체는 쌍방에게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미국에서와 같이 지급수령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지급이체시스템 규칙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sup>142)</sup> 지급통신망의 파손, 손괴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지급의 중단의 경우 책임에 대한 검토는 지급결제제공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없다. 이 같은 지급결제통신망의 파손은 여러 가지 결과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소비자 등 관련 이용자에게 지급의 다른 수단을 사용할 때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하여 적절하게 고지하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sup>143)</sup> 현행법 중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에 네트워크의 하자로 인한 지급중단의 경우 회원 등에게 주지하는 의무규정을 첨가하는 방법이 고려할 수 있고 전자문서와 전자정보에 관한 규정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에 “전자문서 또는 지급결제에 관한 전자정보”를 일관되게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삽입하여 규정하는 방법과 개별적으로 제6조, 제7조, 제9조, 등에서 “전자문서와 지급결제전자정보”를 부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2. 감독기준 강화와 통합적 감독체제 수립

전자지급결제의 발행주체의 감독과 관련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 생각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설립요건을 충족한 경우인

---

the United Commissions on International Trade Law 1989 at 92.” 이와는 달리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4A-202조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42) U.C.C. §4-404(a) 미국은 이 법률의 규정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43) European Commission, A Possible legal framework for the single payment area in the Internal Market, (EU, MARKT/4007/2002 Final) at 17-18.

가 등으로 발행, 운영,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통합감독체제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입법론으로 전자지급결제제의 전반적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방안과 현행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이미 시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현행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무규정에 제5호로 “전자지급결제업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에 관련된 주요사항”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시안에서는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지급거래로 양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제의 형식상 전자금융거래업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전자화폐와 관련해서는 전자화폐의 유통이 통화신용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전자화폐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감독을 요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현행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62조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요구권과 공동검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3조에서 재의요구권을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응하도록 한 규정이 전자지급결제에도 포함되는가의 여부가 관건이 되며 한국은행법 제28조에서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 최저지급준비율,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등의 규정에서 전자화폐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게 전자화폐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62조에 의거 검사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검사권과 검사요구권에 의해 전자지급결제부분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제62조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전자지급결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의 국제적 사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법의<sup>144)</sup> 예금지급준비율의 인상규정, 예금지급준비금 사용규정, 지급준비자산제도 규정, 지급결제운영관리 업무에 따른 평가의무를 부과하고 현행 지급결제제도 관리규정에 있어서 “국제기준충족 권고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44) 한국은행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및 제81조 참조.

## 제2절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개선방안

### 1. 당사자 관련 총칙 규정 신설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 다양한 전자지급결제 당사자 관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일정한 전자지급결제수단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는 전적으로 계약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논의에서는 당사자의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sup>145)</sup>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안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이용자로 대별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당사자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전자지급거래를 실행하는 당사자로 지급인, 수취인, 그리고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당사자인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의 체제속에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화폐의 당사자를 포함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고 전자지급결제 대행업무자, 전자금융보조업자를 부수적 당사자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중계기관으로 전자지급결제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전자지급결제 대행업무자 역시 전자금융보조업자로 참여하게 될 수 있어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이들 보조업자에 대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이용자의 규정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는 자’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에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지급거래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경유하여 거래

145) 가령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지급인과 수취은행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못하거나 중개은행이 개입한 경우 중개은행의 법적지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시된 금액을 전송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고 다른 기관에 위의 관련당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관계의 명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금이체를 완료할 수 없게된 때 전자지급거래를 위하여 수령한 자금을 지급인에게 반환할 의무”와 관련 지급인의 반환청구권이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으로 확대되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와 다른 관련중계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sup>146)</sup>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관련된 규정이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률이 존재하고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발행 및 대금의 결제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법제체제로 당사자 관계를 통일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제기될 수 있다.

## 2. 착오 및 오류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지급결제의 착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민법 제109조를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착오의 유형을 정형화하여 이를 법제에 반영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표시상의 착오에 있어 일정한 부분까지만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그 밖의 경우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즉 전자지급결제와 관련 표시상의 착오 및 내용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론의 경우로 생각되며 취소가 지급인, 전자화폐의 이용자, 전자유가증권의 소지인 등이 지급대상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지급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지급화폐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중복발신의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론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오히려 환금청구권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법이 전자지급결제에 더 바람직하게 보인다. 따라서 환금절차 및 방법이 입법론속에 제시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민법상 부당이득제도를 적용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146) 전자금융거래법 시안 제2조 및 12조.

오류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직원의 실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하고 이 경우 상행위에 의한 대리료 현명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므로<sup>147)</sup> 취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거나 책임부담을 하는 법리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정한 오류유형에 관해서 일반규정을 새로운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의 오류와 경미한 오류로 구분하여 입법규정을 신설하고 “중요한 부분의 오류로 인한 책임을 오류를 발생하게 한 자”에게 책임을 귀속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미한 오류의 경우에는 정정이나 보완 절차를 통해 전자지급결제의 처리기관의 책임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정하게 보인다. 중요한 오류를 예시하여 전자장치를 통한 부정확한 전자지급결제, 전자지급결제의 기재사항 누락, 무권한자의 지급 등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그 책임을 귀책하고, 경미한 오류는 취소나 철회의 법리를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 지급결제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이 정정이나 보완 절차를 통해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구상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도록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자금이체 정기 명세서에 반드시기재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의 경우는 그 누락이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이면 전자의 법리를 적용하여도 무방하지만 기계적 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또한 전자장치 및 기계장치 예컨대 컴퓨터의 에러 등에 의한 부정확한 전자자금이체, 전자단말기로부터 부정확한 금액의 수령 등의 경우에도 다르게 보아야 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취소의 법리를 적용하기보다는 전자장치나 기계장치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해결하는 방법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관련법률에 전자지급결제의 착오 및 오류로 인한 책임규정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sup>148)</sup>

147) 상법 제48조 참조.

148) 전자금융거래법 시안 제8조에서 “··계약체결 및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단서규정으로 통신장애 등 불가항

## 제 4 장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현행법제 개선방안

---

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제5장 결론

전자지급제도는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일정한 연계관계에 있고 전자지급결제제도의 팽창은 전자상거래의 한 영역으로서 전자금융산업의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국가는 전자지급결제의 법적 문제점의 검토에 들어가고 있으며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을 일찍이 제정하였고 유럽연합은 전자화폐의 지침을 제시하여 회원국의 법률로 정비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는 지급결제에 관한 쟁점 중 신용카드 등 여신지급결제제도도 선급카드와 직불카드가 다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종류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정으로 정비되었다. 소비자 관련 법률 중 전자지급결제 부분의 법률은 비록 조문규정이 상세하지 않으나 일부의 원칙을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에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부분에서 입법적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국내법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지급결제제도와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제도의 결합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제기되는 문제는 특정한 지급결제의 영역에서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과 감독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령의 부분개정으로 보완하고 당사자, 착오 및 오류에 관한 문제는 제정론이 제시되었다.

지급 승락과 의무부담에 관한 쟁점은 현행법제아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18조 개정과 전자거래기본법의 제2장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급시점과 관련해 지급결제제도의 종류에 따라 수취인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현금이 지급된 때, 거래 지시된 정보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 및 수취인이 접근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된 때 등 다양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모바일 결제 등 새로운 지급결제를 포함하는 지급시점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법률로 해결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착오 및 오류에 대해서는 전자지급결제가 가지고 있는 특

성을 고려하여 민법 제109조의 착오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법은 전자지급결제에 특질에 비추어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중요부분의 착오 및 오류의 유형을 정형화하여 이를 새 법률의 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오류 정정절차도 부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다양함으로 인해 지급결제별로 규정할 것인가 또는 지급결제에 대 분류인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전자유가증권 등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오류로 인한 책임에 관해서도 오류가 단순한 직원의 실수 또는 컴퓨터의 에러 등에서 기인하는 오류의 경우에는 취소나 철회로 지급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정정의 가능여부로 판단하여 정정이 가능한 부분에서 발생한 오류는 오류의 통보여부를 가지고 책임을 귀책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류자가 정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오류로 인한 책임을 전자지급결제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지고 다만 오류의 통지가 상당한 기간 늦어짐으로 인한 책임만을 이용자 책임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전자지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새 법률에 전자지급제도 일반을 포함하는 통칙과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따르는 일반원칙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하나는 전자지급결제에서 당사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전자지급결제의 대행업무자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자를 통하여”로 확대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이용자에 있어서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는 자로 명문화하여 지급인의 반환청구권이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다른 관련 중계업자에게 직접 반환청구권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전자지급거래계약에서의 당사자 규정과 구분되는 제도의 확립, 이용자의 신뢰확보 및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업무의 확장과 엄밀한 감독 등의 원칙의 설정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단기적 처방인 개정안과 장기적 처방인 제정안을 수용할 필요가 소비자적 측면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일부 규정만으로는 전자자금이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이용자 측면의 고려를 통하여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자유가증권은 아직 전자채권을 제외하고는 도입단계에 있어서 제도적·법률적으로 쟁점을 제기할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전자수표 및 전자어음의 실행에 필요한 금융기관간에 결제방법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는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국제거래법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전자선하증권, 전자 신용장에 있어서는 국제상사위원회에 의한 준칙을 국내법 제정 및 개정예 참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 내

- 강경희, 첫 휴대전화 결제서비스 시작, (조선일보, 2002/7/29)
- 곽윤직, 민법주해(VIII), (박영사, 서울, 1999)
- \_\_\_\_\_, 채권각론, (박영사, 서울, 2001)
- 금융결제원, 국제 B2B 결제·인증 네트워크 확산과 은행권의 대응과제, (금융결제원, 서울, 2002.3)
- 김민석, 김이영, 스마트카드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통권304호)
- 김상래, 인터넷 बैं킹의 법적 문제, -온라인 계좌와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2002-4, 서울, 2002)
- 김성숙, 전자금융거래와 소비자보호방안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서울, 2002)
- 김은기 전자화폐의 법적문제, (상사법연구 제16권 2호 1997)
- 김형민,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해,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2.3.4)
-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서울, 1997)
- 박현욱, 전자화폐 이용관계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1999)
- 산업자원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보고서(VIII) 2001,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서울, 2001)
- 서 한, 모바일결제 표준화 논쟁 불거져, (전자신문, 2002/10/14일)
- \_\_\_\_\_,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확대, (전자신문 2002년 5월 24일 1-3면)
- 소비자보호원, 전자금융거래와 소비자보호방안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년 8월 2일 보도자료)
- 손진화, 새로운전자지급제도의 법률문제와 입법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I), 1998)
- \_\_\_\_\_, 선급전자지급수단의 법률문제, (한국법제연구원:워크샵 2002-4, 서울, 2002)

- \_\_\_\_\_,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률문제, (<http://www.kyungwon.ac.kr/~profsjh/eft/eft-relation.htm>)
- \_\_\_\_\_, “새로운 전자지급제도의 법률문제와 입법론”,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연구 (I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 손희성,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회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2002-3, 서울, 2002)
-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서울, 2000)
- 이강윤, 병원 25% 신용카드 거부, (문화일보 2002.10.31)
- 이경형, 김이형, 국내은행의 모바일 banking 서비스 현황, (정보통신정책 통 310호: 2002/10)
- 이승우, 전자거래 관련법상 철회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2001-9, 서울, 2001)
- 이은영, 민법II, (박영사, 서울, 1999)
- \_\_\_\_\_, 민법 II, (박영사, 서울, 2002)
- 전국경제인연합, 국내 전자지불산업의 동향 및 전망 조사연구, (전경련, 서울, 2002)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전자거래관련법의 개정방향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001년 3월)
- 정경영, 유가증권 전자화에 관한 법률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2002)
- \_\_\_\_\_, 전자외상매출채권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한국전산원, 서울, 2002)
- \_\_\_\_\_, 전자자금이체제도, (세종출판사, 서울, 1999)
- \_\_\_\_\_, 전자화폐의 법적구조, (荷邨 鄭東潤先生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9)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 (KISDI, 과천, 1997)
- 정영화, 전자상거래법, (다산출판사, 서울, 2001)
-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서울, 2001)
- \_\_\_\_\_,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 및 입법론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02-6, 서울, 2002)

## 참고문헌

- 정철근, e-금융거래 고객 과실 없을 땐 금융기관이 책임, (중앙일보, 서울, 2002/08/02)
- 정쾌영, 전자거래법, (무역경영사, 서울, 2001)
- 조성곤, 카드결제 거부 두 차례 땐 사법처리, (한겨레신문, 2002년 8월 16일 경제면)
- 조성일, 김신곤, 박준서, 체신금융 지급결제제도 개선방안, (정보개발연구원, 1993)
-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서울, 1998)
- 최승열, 현행법제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의의에 관한 검토, (월간법제, 법제처, 2002월 3월호)
- 통계청, 전자상거래통계조사 결과(2002년 7월 사이버쇼핑몰조사), (통계청, 서울, 2002/9월)
- 한국은행, 2002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서울, 2002.8월)
- \_\_\_\_\_,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거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참조: <http://www.bok.or.kr/>)
- 한국전산원, 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전자결제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서울, 1998)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B2B 무역결제 워킹그룹 보고서:KIEC-000,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서울, 2002년 1월)
- 홍기문의 10인 공저, 전자상거래와 법률문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광주, 2001)
- 홍기범, 엔머니뱅크, 개인 인터넷포털 SW ‘머니야’ 출시, (전자신문, 2002/03/26일자)
- 홍지민, “이메일도 계약서 해당 여행사 일방해지 부당” 법원, 위자료 지급 판결, (대한매일, 2002년 9월 18일자)

## 국 외

- ABA, Model electronic payments agreement and commentary, (ABA, Chicago, 1996)

- Alan Gahtan and Jeff Graham, Financial services in an electronic age: Some emerging legal issues, (16 Nat'l Banking L. Rev. Vol 16. No. 3, JUNE, 1997)
- Alberta Statutes, [1938] SCR 100, 116
- Allen H. Lipis, Thomas R. Marschall, Jan H. Linker, Electronic Banking, (John Wiley and Son, New York, 1985)
- Anitra Nelson, Mark's concept of money, (Routledge, London, 1999)
- Annabel Z. Dodd, The Essential guide to telecommunications, (Prentice Hall, New Jersey, 2000)
- Arthur Pryor, E-commerce, ITLT 7.10(2), November, December 1999
-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Payment systems in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BIS, Basil, 1999)
-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Survey of electronic money development, (CPSS, November 2001)
- Bank Technologies Group, Banking in the future, (SCN Education B.V(editor): Electronic banking, Vieweg and Sohn Verlagsgesellschaft mBH, Wiesbaden, 2001)
- Barry Sookman, Computer, Internet and Electronic Commerce Law 3, (Carswell, Toronto, 2002)
- Benjamin Geva, The domestic payment system: policies, structure, operation and risk, in J.J. Norton and M. Andenas, Emerging Financial Market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Law: Vol. IV, Lond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참고문헌

- Bill Winter, Banking by Blip: Advent of the checkless society raises legal questions, (69 A.B.A.J. 263, March 1983)
- BIS, Payment System in Australia, (BIS, Basel, 1999)
- \_\_\_\_\_, Statistics on payment systems in the Group of Ten countries, (BIS, Basel, March 2001)
- Brain Welch, Electronic Banking and Security, (Blackwell Business Pub, Oxford, 1994)
- Cass. Com, R. 10 January 1995(JCP 1995, IV, 591)
- Charles Goodhart, Philipp Hartmann, David Llewellyn, Liliana Rojas-Suarez, Steven Weisbrod, Financial Regulation: why, how and where now?, (Routledge, London, 2001)
- Christopher Rees, Electronic Payment System, International Business Lawyer, Vol. 27 No. 6, (1999)
- Colin Scott, The future of EC Telecommunications Law, (Bundesanzeiger, Köln, 1996)
- Currency statistics from Federal Reserve in the USA dated on March 14, 2002.
- Daniel C. Lynch and Leslie Lundquist, Digital Money: the new era of Internet Commerce,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1996)
- David D. Friedman and Kerry L. Macintosh, (May 2001, Santa Clara Computer and High Technology Law Journal, 17 Computer & High Tech. L.J. 273)
- David S. Evans, Richard Schmalensee, Paying with Plastic, (The MIT Press, London, 2001)
- Denis Chamberland, Some issues to be addressed in broadening access to the canadian payments system, (17 Nat'l Banking L. Rev. , June 1998)

- Donal O, Mahony, Michael Peirce, Hitesh Tewari, Electronic Payment Systems for E-Commerce, (Artech House, London, 2001)
- \_\_\_\_\_, Electronic Payment Systems, (Artech House, London, 1997)
- Directive of 93/22/EEC of 10 May 1993 on investment services in the securities field
- EC, manuscript on “Working party No. 1: Harmonisation of turnover taxes”,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3. 4. 1998)
- ECB, Blue Book, (ECB, Frankfurt, August 2002)
- \_\_\_\_\_, Blue Book, (ECB, Frankfurt, June 2001)
- Economic Bulletin, Norges Bank’s oversight of payment systems -authorisation and supervision, (Norges bank, 2000, November, No.3)
- Elinor H. Solomon, Virtual Mone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7)
- Elison Harris Solomon, Virtual Mone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7)
- Ellen d’ Alelio and John T. Collins, Electronic cash under current banking system, (Clifford Chance, London, 1996)
- EMEAP, Payment System in EMEAP Economies, (EMEAP, July 2002)
- Erik Banks, E-finance,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2001)
- EU, COM(2000)333 final
- \_\_\_\_\_, Official Journal No. L. 208. 02/08/1997 P.0052.
- European Central Bank, Blue Book, (European Central Bank, June 2001)

참고문헌

- European Commission, A possible legal framework for the single payment area in the Internet Market, (EC, Brussel, 2002)
- F.A. Mann, the legal concept of Money, (Clarendon Press, Oxford, 1982)
- Federal Reserve in the USA, The Use of Checks and other noncash payment instrument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Reserve Bulletin, August 2002) at 360-374.
- First Council Directive 77/780/EEC of 12 December 1977 on the coordin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credit institutions. (OJ L 322/17.12.1977)(COM (1998)461-1998/0252/COD-1998/0253/COD)
- FSA,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money issuers, (FSA, London, December 2001)
- George C.C. Chen, Electronic Commerce on the Internet: legal development in Taiwan, (Fall 1997,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and Information law)
- Good, "Private Money: Everything old is new again", Economic Commentary,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1998) [<http://www.clev.frb.org>]
- Henry H. Perritt, Legal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s for electronic payment systems, 22 Rutgers Computer & Tech. L. J. 1, 1996
- Hepburn V. Griswold. 75 U.S. 603; 19 L. Ed. 513; 1868 U.S,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Ian F.G. Baxter, the Law of Banking, (Carswell, 1992)
- J-C. Thebault, EPSO Final Conference on Consumer Online Payment: Trends and Challenges for Europe, (Brussels, 19 February 2002)

- J.R.S. Ravell, Banking and Electronic Fund Transfers, (OECD, Paris, 1983)
- Jan Samoriski, Issue in Cyberspace, (Allyn and Bacon, London, 2002) at 67-70.
- Jane Kaufman Winn, Clash of the Titans: Regulating the Competition between Established and Emerging Electronic Payment Systems, (14 Berkeley Tech. L.J. 675, Spring, 1999)
-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rren, Corham and Lamont, Boston, 1996)
- L. Jean Camp, Trust and Risk in Internet Commerce, (The MIT Press, London, 2000)
- Lewis Mandell, The credit card industry: A history, (Twayne Pub, Boston, 1990)
- Lorne D Crerar, The Law of Banking in Scotland, (Butterworths, Edinburgh, 1997)
- Mason v Hunt, 99 Eng. Rep. 192 (KB 1779)
- Michael Brindle and Raymond Cox (Editors), Law of Bank Payment, (FT Law and Tax, London, 1996)
- Michael L. Rustad and Cyrus Daftary, E-Business legal Handbook, (Aspen Law and Business, New York, 2002)
- Michael Meyer, Culture Club, Newsweek July 11 1994 at 38.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nnual Report 2001/2002
- Moss v. Hancock, [1899] 2 Q.B.
- OECD, E-commerce in Europe, (OECD Working Party, Stockholm, 25-26 April 2002)
- Peter Wayner, Electronic Cash for the Net Fails to Catch On ,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8, 1998)
- PSAC, The Payments system in Canada, (Department of Finance, February 1997)

참고문헌

- Robert D. Fram, Margaret Jane Radin and Thomas P. Brown, Altered States: Electronic Commerce and Owning the Means of Value Exchange, 1999 Stan. Tech. L. Rev. 2
- Robert L. Jordan, William D. Warren, and Steven D. Walt, Negotiable instruments, payments and Credits, (Foundation Press, New York, 2001) at 214-220.
- Roger Slavens, Big bucks spent in consumer media to reach b-to-b execs (<http://www.btobonline.com/bToB100/>)
- Roy Goode, Commercial Law, (Penguin, London, 1995)
- Sean M. O'Connor, The De Minimis Exemption of Stored Value Cards From Regulation E: An Invitation to Fraud?, 5 Rich. J.L. & Tech. 6
- Secretary Evans, Commerce Secretary Urges Minority-Owned Businesses to "Go Globally and Grow Locally", (Department of Commerce in the USA, Washington, Aug 26 2002)
- Sid L. Huff, Michael Wade, Michael Parent, Scott Schenberger, and Peter Newson, Cases in Electronic Commerce, (Irwin Mcgraw-Hill, Boston, 2000)
- Staff of the Bank of Canada and the Department of Finance, The Payment System in Canada, (PSAC, 1997)
- The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Proceedings from the workshop on promoting the use of electronic payment, (FRBC & ISLT of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Illinois, October 7-8, 1999)
- The Task Force on Stored Value Cards, A Commercial Lawyer's task on the electronic purse: an analysis of commercial law issues associated with stored-value

- cards and electronic money, (ABA, The Business Lawyer, February, 1997)
- Tom S. Onyshko and Richard C. Owen, Debit cards and store value cards: legal regulation and privacy concerns, (16 Nat'l Banking L. Rev, October 1997)
- Tribunal d'Instance de Grenoble, 21 November 1996
- UN, Draft Model Rules on electronic funds transfers: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Vol. XX, 1989
- \_\_\_\_\_,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 \_\_\_\_\_, UNCITRAL Model Laws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and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1989
- \_\_\_\_\_, UNCITRAL Model Rules on electronic fund transfers. (A/CN.9/AG.IV/WP.37)
- William A. Lovert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Law, (West Publishing, 1997)
- William J. Clinton and Albert Gore,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1st July 1997) <<http://www.iitf.nist.gov/eleccomm/ecom.htm>>